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改正稅法 分析

(Analysis : 1993 Tax Legislation)

1994. 3

韓國租稅研究院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改正稅法 分析

(Analysis : 1993 Tax Legislation)

1994. 3

韓國租稅研究院

譯者 序文

1993년 8월 10일 발효된 클린턴 美 行政府의 稅制改革은 財政赤字의 減縮, 雇傭創出을 위한 經濟 活性化, 生産性 向上을 위한 長期的 公共投資의 增大라는 클린턴 行政府의 세 가지 경제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具體的인 改革의 內容은 레이건-부시 行政府 당시 稅制의 基本原理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差異點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課稅基盤의 擴大와 稅率引下라는 1986년 세제개혁 당시의 기본원리에 終末을 고하고 限界稅率을 引上했을 뿐 아니라 각종 所得控除, 稅額控除를 導入 또는 延長하여 일정 유형의 投資促進을 위한 租稅誘引裝置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제개혁은 지난 10년간 美國經濟의 景氣沈滯와 財政赤字에 대한 稅制側面에서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개편이 美國經濟의 活性化와 財政赤字의 減縮에 어느 정도 效果的일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 10년간의 미국 세제의 기본원리를 相對化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意義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는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트」(Coopers & Lybrand)社가 發刊한 *Analysis: 1993 Tax Legislation*으로서 1993년 8월 10일 발효된 一括 豫算 調整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중 주요 조세항목들을 개관한 것이다. 이 자료는 자료전체에 걸쳐 풍부한 예를 수록하고 부연설명함으로써 개정된 條項의 效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번역에는 韓國租稅研究院의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I ~ IV章은 安鍾範 博士, V ~ X章과 XIV章은 李性旭 博士, XI장은 安鍾錫 博士, 그리고 XII ~ XIII章과 XV章은 朴釘洙 博士가 각각 翻譯하였다. 譯者들은 抄譯 또는 校閱過程에서 수고해 준 申基銑, 金勇周, 林駿, 金正弦 研究員에게 感謝를 표하고 싶다.

아무쪼록 본 資料가 美國 稅制에 대한 理解를 深化시키고 國際化·開放化時代에 뒤처지지 않는 政策의 樹立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4年 3月 譯者

目 次

I. 序 論	1
II. 個人所得稅	4
1. 個人所得稅率	4
2. 個人最低限稅	7
3. 人的控除	9
4. 項目別 控除	9
5. 個人推算稅 關聯 義務事項	10
6. 社會保障	11
7. 醫療保險 標準報酬額上限 廢止	14
8. 醫療保險控除	14
9. 寄附財産의 價格上昇에 따른 AMT 調整	15
10. 勤勞所得稅額控除	16
11. 災害救護金	17
12. 個人的 利益에 關係되는 다른 條項	17
III. 資本差益課稅	18
1. 一般所得을 資本差益으로 轉換하는 것을 막기 위한 條項	18
IV. 適格退職年金	22
V. 相續·贈與稅	23
1. 最高稅率	23
2. 遺産 및 信託財産所得에 대한 稅率	24

VI. 法人稅	27
1. 法人稅率	27
2. 企業推算稅	29
3. AMT 減價償却	30
4. 任員 報酬	32
5. 로비 活動	33
6. 接待費	35
7. 팁所得에 대한 稅金減免	36
8. 클럽 會費	36
9. 移住費用	37
10. 配偶者 및 扶養家族의 旅費	39
11. 負債償還	39
12. 奢侈性 消費稅	40
13. 研究開發費 稅額控除	40
14. 雇用主의 教育支援	41
15. 特定職業 稅額控除	41
16. 聯邦失業附加稅	41
VII. 無形資產 處理方式	43
1. 同業解止에 따른 持分支給에 대한 特別措置의 改正	47
VIII. 中小法人의 投資誘引	48
1. 179條 經費 限度額의 引上	48
2. 特定 資本利得의 課稅減免	48
3. 投資利得의 特定創業會社에 대한 再投資	51

IX. 權限圈域, 企業區域과 其他 誘引制度	52
1. 權限圈域과 企業區域	52
2. 地域開發公社 稅額控除	54
3. 인디언部落 指定保全地의 事業에 대한 租稅誘引	54
X. 에너지稅	55
1. 運送燃料稅	55
2. 디젤稅	58
3. 自動車燃料 消費稅	58
XI. 國際關係	59
1.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事業場에 대하여	59
2. 被支配 外國法人	60
3.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變化	62
4. 外國納付稅額控除의 限度에 影響을 미치는 變化들	62
5. 移轉價格決定	63
6. 外國人의 國內投資	64
XII. 納稅順應의 義務	66
1. 不誠實申告 關聯 罰課金	66
2. 負債를 辨濟했을 경우의 申告義務	66
3. 45日間의 利子免除期間의 擴大	67
4. 其他給與의 源泉徵收	67
XIII. 非營利團體	68
1. 寄附金の 證憑	68
2. 로비費用 控除	69
3. 非營利團體의 不動產 投資	71

X IV. 不動產	73
1. 非住居用 不動產의 償却期間	73
2. 消極的인 活動에 따른 損失	73
3. 不動產事業 負債의 取扱	74
4. 非營利團體의 不動產投資	75
5. 低所得層 住宅 稅額控除	75
X V. 其他	77
1. 聯邦貯蓄貸付保險會社 補助	77
2. 證券 딜러의 市場會計 調整	77
3. 州政府 租稅에의 影響	78

I. 序 論

1993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계획에는 財政赤字 減縮, 雇傭創出을 위한 經濟活性化, 생산성 향상을 위한 長期的 公共投資의 增大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1993년 一括豫算調整法案(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도 이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미 연방 상하원은 1993년 8월 첫째 주에 이 豫算調整法案을 통과시켰고, 클린턴은 1993년 8월 10일 법안에 서명하여 發效시켰다.

예산조정법안의 租稅部門은 대통령의 경제계획의 초점이었다.(이는 新法으로 불려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4,960억달러의 赤字減縮分 중 2,410억달러를 세입의 증대로 충당하고자 한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경제회복의 불확실성하에서 이루어질 실질적인 세수증가 때문에 입게될 국민들의 조세충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일 뿐 아니라 財政赤字規模와 공기업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계획을 개괄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훨씬 크다”는 것 또한 주목을 받고 있다.

1993년 세법은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중심적인 경향이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세율인상에 따라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접대비, 단체회비, 그리고 임원의 “과도한” 보수 등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삭감 또는 폐지하여 법인소유자나 경영인을 세부담 증가대상으로 삼았다.

1986년 稅制改革法의 기본원리는 세율을 낮추고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이것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세제혜택을 폐지하여 課稅基盤을 넓힘으로써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93년 세법은 이와 같은 1986년 세제개혁법의 기본원리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1993년 세법은 더 넓은 과세표준에 대해 限界稅率을 상당히 인상했고, 일정한 유형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稅制惠澤과 誘引을 다시 도입했다. 어떤 영역에서는 新法은 1986년의 변화의 일부를 역전시키기 시작했다.

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 외에 1993년 세법에서 조세정책의 추진방향을 식별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적자감축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목표로 한 미묘하게 균형잡힌 정치적 타협을 보여주는 것 같다.

新法の 상당한 부분은 1992년 선거 당시의 세금논쟁에서부터 유보되어 온 항목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연구개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일자리 마련과 같은 종료시점을 맞은 세제혜택의 연장, 사치세의 폐지, 부동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新法은 세율을 상당히 인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을 위한 몇 가지 節稅方法도 제공하고 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년 이상 소유한 創業冒險産業에 대한 주식투자에 대해 資本利得取扱上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반소득과 자본이득소득간의 과세 차별이 다시 등장하였고 이것은 자본이득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유형의 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조세지원의 또 다른 형태로서 最低限稅制度(Alternative Minimum Tax ; AMT)의 수정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많은 事業者團體들은 AMT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경기하향 국면에 기업에 주는 부담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비생산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AMT에 관한 보완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법은 AMT에 관해 제기된 문제들을 인정하고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보여주었다.

<概 觀>

1993년 세법논쟁은 1990년대의 논쟁의 기초를 예시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제안했던 광범위한 Btu세를 포기하는 대신에 新法은 가솔린과 유사 연료에 대해 1갤런당 4.3센트의 에너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Btu세가 제안되었을 때, 행정부의 일부는 附加價値稅 또는 소비세를 통해 醫療保障制度 改編(health care reform)을 지원할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부가가치세는 행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Btu세는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 두 개의 소비세에 대한 결말은 나지 않았다.

1993년 세법은 美國內 투자활동과 관련한 규제와 財産稅額控除의 변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國際租稅條項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 추세로 인해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통괄하는 국제조세조항은 복잡해지게 되며, 따라서 이 영역에서 더욱 심층적인 입법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1980년대가 稅收輕減의 시기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90년대는 稅收增加의 시기로 보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1993년 세법은 상당한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가 크고 의료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증가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조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실적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만일 1993년 세법개정의 결과로 미국경제가 비틀거린다면 더 이상의 세수증가는 의문시될 것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특정분야에 限하여 조세유인이 주어지고, 법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개인과 법인이 가능한 한 창조적이고 신중하게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는 예산조정법의 주요 조세항목들을 개관한 것이다. 자료전체의 부연설명(observation), 예, 그래프, 표 등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항의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법개정의 효과를 판단하고 租稅計劃(tax planning)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법 변화의 有效日에 주목해야 한다.

新法の 입법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했던 Coopers & Lybrand의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마련한 것은 新法の 여러 조항들의 잠재적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1993년 세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II. 個人所得稅(Individuals)

1. 個人所得稅率

1993년 세법은 15%, 28%, 31%의 현행 個人所得稅 課稅區間에 36%, 39.6%의 두 가지 과세구간을 추가한다. 이 새로운 세율은 소급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또한 長期資本利得은 변함없이 28%라는 최고 법정세율로 과세된다.

4번째 과세구간에 대한 36% 세율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115,000달러 - 獨身

127,500달러 - 家口主

140,000달러 - 夫婦合算의 경우

70,000달러 - 夫婦別算의 경우

5,500달러 - 遺産財産과 信託財産 所得(Estates and Trusts Income)

5번째 과세구간에 대한 39.6% 세율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250,000달러 - 獨身, 家口主, 또는 夫婦合算의 경우

125,000달러 - 夫婦別算의 경우

7,500달러 - 遺産財産과 信託財産 所得

이들 고세율은 소득원이 2명인 가족에 대해 결혼에 따른 불이익(marriage penalty)을 심화시킨다. 예를 들면, 각각 110,000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독신은 새로운 고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 두 명이 결혼하면 과세소득 중 80,000달러는 36%의 세율로 과세되어(220,000달러 - 140,000달러), 추가적으로 4,00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결혼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은 39.6% 과세계금이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독신과 夫婦合算水準에 부과되기 때문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각각 225,000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독신 개인은 39.6%의 과세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할 경우 200,000달러는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450,000달러 - 250,000달러).

- 1993年 個人所得稅率

독 신			부부합산의 경우		
과세소득	세 액	초과소득에 대한 세율	과세소득	세 액	초과소득에 대한 세율
0	0	15	0	0	15
22,100	3,315	28	36,900	5,535	28
53,500	12,107	31	89,150	20,165	31
115,000	31,172	36	140,000	35,929	36
250,000 초과	79,772	39.6	250,000 초과	75,529	39.6
부부별산의 경우			가 구 주		
과세소득	세 액	초과소득에 대한 세율	과세소득	세 액	초과소득에 대한 세율
0	0	15	0	0	15
18,450	2,768	28	26,900	4,440	28
44,575	10,083	31	76,400	17,544	31
70,000	17,965	36	127,500	33,385	36
125,000 초과	37,765	39.6	250,000 초과	77,485	39.6

現行法과 같이 課稅區間의 基準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indexed)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 조정(indexation)은 36%와 39.6% 과세계급에 대해서는 1995년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조정의 지연에 따른 課稅區間 上昇效果(bracket creep)로 특정한 개인들에게는 고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독신 개인이 1993년에 114,000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는 1994년에 생활비 상승분을 받는다. 이 봉급의 증가로 그의 總課稅所得은 115,000달러 한도를 넘어서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고세율의 부과는 특정 유형의 투자와 소득을 고소득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투자자는 免稅債券 또는 最高所得稅率보다 10% 이상 낮은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성장(growth)투자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세율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 부모 및 친척에 대한 “소득이전”을 더욱 유리하게 한다(일반적으로 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불로소득은 부모의 한계세율로 과세된다).

個人的 納稅計劃 樹立을 위한 考慮事項

전통적인 납세계획 기법은 소득을 제외하고, 이연시키고,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6년 세법에 의해 도입된 많은 변화들로 인해 이러한 기법들은 가치가 없어졌다. 그러나 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그리고 일반소득과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세율의 차등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기법들은 더욱 유익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선의 전략은 현재의 공제액을 최대화하고 현재의 인정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차기연도로 납세를 이연시키면 納稅義務 期限까지 節稅가 가능해진다.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所得에서 除外 : 예를 들어 면세채권에 대해 투자한다.

所得을 移延 :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의 이연을 위한 보상계약의 구조화 또는 實物資產投資를 내포하는 현물거래같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을 이용한 거래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증가분과 인상된 의료보험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소득의 실현을 早期化하는 것이 유리하다.

控除의 加速化 : 예를 들어 연말지출분을 미리 지출한다.

所得移轉 : 예를 들어 14세 이상 미성년자들 또는 친척에게 소득이 발생되게 될 재산이전을 고려한다.

물론, 慈善寄附金 控除는 새로운 高稅率體系下에서 더 많은 세제혜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자선신탁과 같은 기부기법은 더욱 대중성을 띌 수 있다.

個人所得稅率의 상승은 개별 소유자로서 또는 S 법인(S Corporation)¹⁾ 또는 동업기업(partnership)²⁾을 통해 운영하는 많은 法人所有者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所

1) S 법인은 법인이 S 법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과세연도의 소기업을 말하며 S 법인이 아닌 경우는 모두 C 법인이다. S 법인의 요건은 i) 내국법인으로서 주주가 35명 이하이고, ii) 부동산이나 신탁자산 이외의 자연인이 아닌 납세자가 주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iii) 비거주 외국인이 아니어야 하고, iv) 두 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이다. 이하 각주는 모두 역자주이다.

2) 동업기업은 개인납세자들이 공동으로 사업경영을 위하여 모이거나 회사들이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형성된다. S 법인이나 동업기업 그 자체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법인의 경우)이나 소득과 이에 따른 비용을 직접 동업자(partner)에게 귀속시켜 개인에게만

得移延, 所得移轉, 그리고 所得變換 기법은 이들 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된다.

세율인상에 따른 추산세액을 미납할 경우의 벌칙은 1993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993년 源泉徵收表에는 이러한 고세율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잠재적인 납세미달이 세율의 변화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에 대해 즉, 新法의 세율과 舊法의 세율하에서 각각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新法은 개인이 세율증가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과도적인 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은 新法의 세율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될 1993년 세액을 연 3회에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개인은 납세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1993년 납세신고와 함께 1회분을 납세해야 한다. 그 후 계속해서 1994, 1995년 세금납부 의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연기된 납세는 의무기간에 지불되면 이자를 물지 않을 것이다. 분할납부는 最低限稅制度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급되는 세액증가는 개인이 3년에 걸쳐 증가분을 분산시키기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4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크게 증가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세금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은 1994년 4월 15일까지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소비를 자제하거나 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個人最低限稅

새로운 세법은 개인최저한세 소득에 대한 단일 24% 세율을 二重 稅率體系로 대체했다. 소급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二重 最低限稅 稅率體系는 다음과 같다.

26% : 공제(exemption)액 초과 175,000달러까지의 AMT 소득(부부별산의 경우 87,500달러까지).

28% : 175,000달러 수준을 넘는 AMT 소득.

AMT 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33,750달러 : 獨身, 또는 家口主.

45,000달러 : 夫婦合算의 경우.

22,500달러 : 夫婦別算의 경우/ 遺産財産과 信託財産.

과세하게 된다.

個人 最低限稅의 比較

假定 : 2명의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조정총소득 \$ 500,000

항목별 공제액 \$ 71,431

세금우대(tax preferences) 및 조정(adjustments) 105,000달러

(정규세액의 계산)

	구 법	신 법
調整總所得	500,000달러	500,000달러
差減項目別 控除許容額	(59,685달러)	(59,685달러)
差減 免稅所得	0달러	0달러
課稅所得	440,315달러	440,315달러
所得稅	129,026달러	150,893달러

(최저한세 계산)

課稅所得	440,315달러	440,315달러
加算 免稅所得	0달러	0달러
加算 稅金優待 및 調整	105,000달러	105,000달러
AMT 所得控除 許容額	0달러	0달러
最低限稅 課稅所得	545,315달러	545,315달러
暫定 最低限稅	130,876달러	149,188달러
差減 定規稅額	(129,026)	(150,893달러)
最低限稅	1,850	0달러

위의 예는 어떤 개인이 더 이상 AMT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1993년 AMT 세율이 1992년 AMT 세율보다 더 높다고 할지라도 1993년 정규세율의 증가효과 때문에 개인이 AMT를 납부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공제액은 구법과 같이 과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新法 이전에 最高 定規 個人所得稅率과 最低限稅率間의 차이는 7%였다(31% - 24%). 그러나 新法으로 이 세율간의 차이는 11.6%로 증가했다. 그리고 정규세율의 증

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AMT 제도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정규적인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3. 人的控除

新法은 인적공제와 부양가족공제의 단계적 삭감(phase-out)을 영구화시켰다. 1993년에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調整總所得(adjusted gross income; AGI)의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 108,450달러 : 독신
- 135,600달러 : 가구주
- 162,700달러 : 부부합산의 경우
- 81,350달러 : 부부별산의 경우

인적공제액(현재 각 개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2,350달러)은 이상의 한계금액을 초과하는 조정총소득의 매 2,500달러마다 2%씩 감소된다. 이 단계적 삭감은 199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新法으로 영구화되었다.

이 공제액 삭감은 특정 소득범위의 납세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세율인상 효과를 야기시킨다. 즉, 인적공제의 단계적 삭감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계층의 최고세율을 약 2/3 - 3/4%p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4. 項目別 控除(Itemized Deductions)

新法은 항목별 공제 한도를 영구화시켰다. 한도하에서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 - 의료비, 재해와 도난손실 그리고 투자이익을 제외 - 는 특정 基準金額(매년 인플레이션에 의해 조정되는)을 초과하는 調整總所得 殘餘分の 3%만큼 삭감된다. 이때 삭감은 이들 항목별 공제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1993년의 기준금액은 개인과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108,450달러, 부부별산의 경우 54,225달러이다. 항목별 공제에 있어 삭감은 1995년 12월 31일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新法을 통해 영구화되었다.

항목별 공제한도는 고소득자에게는 최고세율을 1.188%(39.6 × 0.03) 증가시킨다. 또한 최고세율(39.6%)과 항목별 공제한도를 결합하면 최고한계세율은 40% 이상으로 올라간다.

5. 個人推算稅 關聯 義務事項

일반적으로 개인은 推算稅額을 과소납세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기한내에 (1) 전년도 납세신고분의 100% 혹은 (2) 당해연도 납세신고분의 90%와 동일한 추산세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연간소득에 기반하여 추산된 세액의 납부는 허용된다. 임금에서 소득세를 源泉徵收하는 것은 추산세액의 납세로 간주된다.

개인 또는 기혼부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우 前年度 세액의 100%를 납부하는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1) 당해연도의 수정된 AGI가 前年度 AGI보다 40,000달러(부부별산의 경우 20,000달러) 이상 많은 경우 (2) 당해연도의 수정된 AGI가 7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부부별산의 경우 37,500달러) 그리고 (3) 추정세액납부가 직전 3 과세연도 중 1개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그러나 新法에서는 1993년 이후부터 전년도 AGI가 150,000달러 이하인 개인과 기혼부부에게는 전년도 세액(tax liability)의 100% 납부가 허용된다. 반면 전년도 AGI가 150,000달러 이상인 개인과 기혼부부에게는 전년도 세액의 110%로 인상된다. 부부별산의 경우 AGI의 기준은 75,000달러이다. 현재연도 결산세액 또는 연간세액의 90% 납부는 아직도 선택사항으로 이용가능하다. 이 경우 앞에서 기술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법은 난해했다. 왜냐하면 (1) 40,000달러의 증가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2) 추산의 기초가 되는 당해연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종종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특히 동업기업이나 S 법인의 소유자에게는 민감한 문제였다.

이러한 단순화는 중대한 변화이다. 新法은 고율의 推算稅 納付(150,000달러를 초과하는 AGI)를 위한 유인이 당해연도가 아닌 前年度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욱 단순하다.

新法은 前年度 AGI가 150,0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과 부부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더 높은 추산 납부를 요구한다. 현재연도 소득이 前年度 所得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에게는 현재연도세액의 90% 납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크게 증가한(즉, 前年度 세액의 110%가 현재연도 고소득에 대한 세액의 90%보다 적은 경우) 개인이나 부부에게는 前年度 세액의 110%를 납부하는 방법이 유리하고 더욱 단순한 방법이다.

推 算 稅

既婚夫婦인 밥과 제인은 夫婦合算을 하고 있다. 1993년에 그들은 220,000달러의 課稅所得을 신고하였고 64,73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1994년에 그들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新法下에서 밥과 제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전년도 납세액의 110%에 근거하여 납부할 수 있다.(연 71,200달러, 또는 1분기 당 17,800달러에 상당하는) 둘째, 금년도 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마다 납부할 수 있다. 금년도 세액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 110% 납부가 제공하는 확실성으로 밥과 제인은 어느 시점에서 前年度 納稅額에 근거한 접근이 유리한지를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도 課稅所得이 257,050달러(이 금액의 세금은 78,320달러이다)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推算納稅額을 결정하는 데 90% 접근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78,320 \text{달러} \times 90\% = 71,200 \text{달러}$). 그러나 1994년도 세금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안전하게 전년도 납세액의 110%를 납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다.

6. 社會保障

세법은 어떤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暫定所得(provisional income)을 가지는 개인이 수혜받는 社會保障受惠金の 5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잠정소득은 일반적으로 AGI, 면세이자 그리고 그외의 조정분에 사회보장수혜금의 1/2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

된다. 基準金額은 미혼 개인의 경우 25,000달러, 부부합산의 경우 32,000달러, 부부별 산의 경우 0달러이다.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개인은 총소득에 (1) 사회보장수혜금의 50% 또는 (2) 적용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잠정소득 초과분의 50% 중 적은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1993년 이후에 받는 受惠分부터 적용되는 新法下에서는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한 2 단계 과세시스템이 있다. (1) 현재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수혜금의 50%에 대한 세금이 계속 유지되고 (2) 미혼 개인에 대한 기준금액 34,000달러와 부부합산에 대한 기준금액 44,0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수혜금의 85%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社會保障受惠金 課稅를 위한 “暫定所得”의 正義

다음 소득을 포함한 수정된 調整總所得(AGI)과 사회보장수혜금의 1/2을 합한소득

- o 조정총소득(AGI)
- o 면세채권이자
- o 외국으로부터의 소득

구법에서의 규정은 현재 기준금액의 초과 그리고 새로운 기준금액 미만의 잠정소득을 가진 개인에게는 여전히 적용된다. 상위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잠정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1) 사회보장수혜금의 85% (2) a) i) 현행법에서는 포함된 금액 또는 ii) 4,500달러(독신)나 6,000달러(부부합산의 경우) 중 적은 부분과 b)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暫定所得 超過分の 85%의 합계 중 적은 것을 총소득에 포함한다. 1994년 移轉 年度로 귀속될 수 있는 一時給付金(lump-sum distributions)은 계속 저세를 혜택을 받을 것이다.

종종 이 조항이 사회보장수혜금의 50% 또는 8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한다고 막연하게 말한다. 많은 경우 수혜금의 어느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社會保障受惠金에 대한 課稅額 計算

이 표는 은퇴한 4쌍의 표본부부의 사회보장수혜금 중 과세부분을 비교한 것이다. 각 부부는 부부합산이며, 사회보장수혜금으로 14,000달러를 받는다. 다른 소득은 이자와 자본이득이다.

항 목	부부A	부부B	부부C	부부D
사회보장수혜금	\$ 14,000	\$ 14,000	\$ 14,000	\$ 14,000
기타소득	21,000	31,000	40,000	86,000
총소득	35,000	45,000	54,000	100,000
임시소득	28,000	38,000	47,000	93,000
과세기준금액(구법)	32,000	32,000	32,000	32,000
구법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임시소득 초과분	0	6,000	15,000	61,000
(A) 초과분의 1/2	0	3,000	7,500	30,500
(B) 사회보장수혜금의 1/2	7,000	7,000	7,000	7,000
(C) A, B 중 적은 것:				
과세가능 AMT(구법)	\$ 0	\$ 3,000	\$ 7,000	\$ 7,000
과세기준금액(신법)	44,000	44,000	44,000	44,000
신법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임시소득초과분	n/a	n/a	3,000	49,000
(D) 초과분의 85%	n/a	n/a	2,550	41,650
(E) (C)와 \$6,000 중 적은 것	n/a	n/a	6,000	6,000
(F) (D) + (E)	n/a	n/a	8,550	47,650
(G) 사회보장수혜금의 85%	n/a	n/a	11,900	11,900
(F)와 (G) 중 적은 것	n/a	n/a	8,550	11,900
(H) 신법하의 과세가능 금액	\$ 0	\$ 3,000	\$ 8,550	\$ 11,900
신법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	\$ 0	\$ 0	\$ 1,550	\$ 4,900
즉, (H) - (C)				

부부(married filers)의 경우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한 과세의 기준금액이 개인(single filers)보다 단지 10,000달러 많을 뿐이기 때문에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히 따른다.

예를 들면, 각각 37,000달러의 총소득을 가지고 있고 각각 그 중 12,000달러가 사회보장수혜금인 두 명의 개인은 각각 사회보장수혜금 중 3,000달러에 대해 과세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두 명이 결혼하면 사회보장수혜금 중 20,400달러에 대해 과세되고 14,400달러(20,400달러 - 6,000달러)가 증가한다.

7. 醫療保險 標準報酬額上限(Health Insurance Wage Base Cap) 廢止

1994년 이전에는 일정 상한(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됨)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고용주와 종업원 각각이 1.45%의 醫療保險稅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일정 상한 금액이 135,000달러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영소득의 135,000달러에 대해 2.9%의 의료보험세를 부과한다. 자영업자는 총소득에 대한 조정으로서 의료보험세를 포함하여 自營稅(self-employed tax) 금액의 1/2의 공제가 허용된다. 일정 상한을 초과하는 임금과 자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1994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新法에서는 의료보험세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대한 상한을 폐지한다. 이것은 모든 임금과 자영소득이 과세될 것임을 의미한다.

醫療保險 賃金上限(health insurance wage cap)의 폐지는 고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항과 결합하면(최고세율, 항목별 공제의 한도, 의료보험세의 결합을 통해) 임금소득자에 대한 最高限界稅率을 42% 이상으로, 자영업주에 대한 최고한계세율을 43.1%로 인상시킨다.

8. 醫療保險控除

1992년 6월 30일에 시효가 만료된 구법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그의 배우자가 고용주가 보조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 자영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보험지출비의 25%까지 사업비로서 소득공제할 수 있었다.

自營業者에 대한 醫療保險 標準報酬額 效果

이 표는 표본 자영업자에 대한 醫療保險 標準報酬額의 철폐가 갖는 영향을 비교한 것이다. 假定들은 다음과 같다.

- 동업자 A : 동업기업 소득은 300,000달러, 항목별 공제는 50,000달러
- 동업자 B : 동업기업 소득은 200,000달러, 항목별 공제는 33,000달러
- 각 동업자는 기혼이며 합산하고 자녀는 없다. 다른 소득도 없다.

	동업자 A		동업자 B	
	구법	신법	구법	신법
동업기업 소득	300,000달러	300,000달러	200,000달러	200,000달러
- 자영세의 1/2	(5,529달러)	(7,588달러)	(5,529달러)	(6,249달러)
조정총소득	294,471달러	292,412달러	194,471달러	193,751달러
- 항목별 공제 (한도 후)	(44,419달러)	(44,481달러)	(30,419달러)	(30,441달러)
- 인적 공제	0달러	0달러	(3,478달러)	(3,478달러)
과세소득	250,052달러	247,931달러	160,574달러	159,832달러
소득세	70,045달러	74,784달러	42,306달러	43,068달러
자영세	11,057달러	15,176달러	11,057달러	12,498달러
계	81,102달러	89,960달러	53,363달러	55,566달러

동업자 A의 세금증가분은 8,859달러이고 그 중 47%는 의료보험세에 기인한다.
동업자 B의 세금증가분은 2,203달러이고 그 중 65%는 의료보험세에 기인한다.

新法은 자영업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비용에 대한 25%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1992년 7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다.

9. 寄附財産의 價格上昇에 따른 AMT 調整

구법은 AMT를 목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된 자본이득을 낚는 재산(동산, 부동산, 무형자산)이 조정된 표준을 초과하는 가격상승이 발생할 경우 이를 優待項目

(preference item)으로 취급하여 AMT 소득에 합산했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2년 7월 1일 이전 유형의 동산을 기부한 경우 AMT 소득으로의 합산은 필요하지 않았다.

新法에서는 有形動産(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기부에 대해서는 1992년 6월 30일부터 그 외 모든 寄附財産에 대해서는 1992년 12월 31일부터 가격이 오른 재산의 증여에 대한 AMT 소득으로의 합산이 폐지된다.

寄附財産의 價格上昇에 따른 AMT 調整

우대조항으로서 가격상승의 최저한세 취급은 다음 날짜와 같이 폐지된다.

	1992.6.30	1992.12.31
유형 동산	—————>	
기타 모든 부동산과 무형 재산(예: 주식)	—————>	

유형 동산에 대한 가격상승을 위한 우대조항으로서 AMT 취급은 1990년 이후 실효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선단체에 가격이 오른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AMT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위험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다. 新法이 AMT 우대조항을 만들지 않고 1992년 잔여분에 대한 유형 동산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부를 한 개인은 1992년 세무신고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우대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10. 勤勞所得 稅額控除(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3년 근로소득의 첫 7,750달러 중 18.5%에 상당하는 勤勞所得 稅額控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적격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9.5%). 1993년 최대 공제액은 1,434달러(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1,511달러)이다. 適格子女가 없는 경우 EITC는 이용할 수 없다.

최대 공제액은 근로소득이 12,200달러를 초과할 때 점차 삭감되기 시작하여, 근로

소득(더 크다면 AGI)이 23,050달러를 넘는 경우 완전히 상쇄되어 없어진다. 모든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근로자는 임금이 지불될 때 고용주로부터, 또는 세무신고가 처리될 때 정부로부터 미리 EITC를 받을 수 있다. 추가적인 靑少年控除와 추가적인 醫療保險控除 역시 적격 근로자는 이용가능하다.

1994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新法은 EITC를 적격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했을 뿐 아니라 단순화시키고 있다.

EITC를 자녀없는 근로자들에게 확대하는 것은 에너지세의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의회는 新法의 에너지세 부분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EITC의 범위를 축소조정했다.

공제대상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최대 공제액은 2,038달러(1994), 2,098달러(1995)일 것이다. 두 명 이상인 경우, 최대공제액은 2,527달러(1994)일 것이다. 자녀가 없는 25~65세의 근로자도 EITC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新法은 추가적 공제를 폐지할 것이다.

11. 災害救護金

위원회는 재해구호를 지원하는 조항을 마지막 순간에 추가했다. 新法은 1993년 이후 세무신고부터 재해복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재해당사자가 保險金受惠를 위해 本人意思와 관계없이 주거지를 옮길 경우에도 보험금수혜액이 수익으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은 비자발적 주거지 변경이 대통령이 인정한 재해의 결과일 경우에 적용된다.

12. 個人의 利益에 關係되는 다른 條項

개인은 또한 이사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고, 사치품목에 대한 물품세를 폐지하는 제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第VI章「法人稅」참조). 또한 慈善寄附金의 증명을 위한 새로운 조건이 있다(第XIII章「非營利團體」참조).

III. 資本差益課稅(Capital Gains)

개인의 純資本利得(즉, 純長期資本利得에서 純短期資本損失을 뺀 것)에 대한 최고 법정세율은 28%이다. 자본손실은 개인의 경우 오직 당해연도의 자본이득과 3,000달러를 합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높아진 일반소득세율은 1993년 1월 1일부터 유효하지만, 최고 법정 資本差益稅率은 28%로 유지된다. 자본차익소득이 일반소득보다 낮게 과세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본차익소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일정 자격을 갖춘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第VIII章「中小法人의 投資誘引」참조).

심의위원회는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차익에 대해 30.8%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원의 제안을 기각한 바 있다.

1. 一般所得을 資本差益으로 轉換하는 것을 막기 위한 條項

납세자가 자본차익에 대한 우대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新法은 일반소득을 자본차익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轉換去來로 看做되는 경우

- 재산의 인수와 동시에 똑같은, 또는 사실상 동일한 재산을 미래에 매도한다는 동의를 있을 때.
- 「스트래들」(straddle : 매도옵션(put option)과 매입옵션(call option)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일 때.
- 貸付라는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자와 같은 성격의 수익이 자본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납세자에게 매매될 때.
- 국세청(IRS) 규정에서 전환거래로 기술된 것일 때.

1993년 4월 30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어떤 轉換去來(conversion transaction)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도 일반소득(이자소득이 아닌)으로 간주된다. 이때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의 규모는 해당기간 동안에 순투자로부터 수익이 연방이자율의 120%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 된다.

轉換去來는 납세자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해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수익은 純轉換投資의 시간가치로부터 발생한다. 전환거래를 통해 납세자는 貸付者라는 경제적 지위에 서게 된다.

옵션딜러나 상품중개인이 그들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한 거래는 전환거래로부터 배제된다.

상원보고서의 다음 예는 그 조항을 예시하고 있다.

X가 1994년 1월 1일 100달러짜리 주식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96년 1월 1일 115달러에 Y에게 그 주식을 팔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한다. 적용가능한 聯邦利率이 5%라고 가정한다.

1996년 1월 1일에 X는 그들의 약속대로 115달러에 그 주식을 Y에게 판다. 구법하에서 X는 15달러의 資本差益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법 조항하에서는 12.36달러(즉, 100달러의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2년동안 복리로 계산된(compounded) 5%의 120%)는 일반소득으로 다시 간주된다.

전환거래에서 납세자의 순투자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납세자의 자금원천은 고려되지 않는다.

신법의 특별 규정은 부분적인 전환거래의 경우 損失設定(built-in loss)이 존재하는 상황들을 취급하고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에 X가 이전 예와 같이 150달러의 주식을 구입하여 주식값이 100달러로 하락했을 때 그 주식을 1994년 1월 1일의 轉換去來의 일부분으로 사용했다고 하자. 이때 주식은 이 조항을 목적으로 100달러로 평가되어, 그 결과 자산이 Y에게 판매되었을 때 50달러의 損失設定을 인정받는다라는 것만 제외하면 앞의 예와 같을 것이다. 그 50달러의 손실의 성격은 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장래에 투자자가 제공하기로 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실제로 거래에 사용되었을 때까지 투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의 투자도 실제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용될 수 없다.

일단 거래가 전환거래로 간주되면, 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득은 一般所得과 資本差益으로 나뉘어져야 하는데, 이는 많은 분량의 회계기록을 수반한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는 일반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할 자본차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자본손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계산방법은 전환거래의 지속기간(duration) 동안의 순투자에 근거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본차익에 대한 세율이 일반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법인체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新法에는 또한 일반소득을 자본차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항들이 있다.

- 市場割引價格으로 구매한 어떤 債務證書(debt instruments)로부터 발생한 시장할인 이득만큼은 일반소득으로 취급한다. 新法은 이 조항을 1984년 7월 18일 이전에 발행된 면세채권과 시장할인채권을 1993년 4월 30일 이후 구입하면 그 채권에도 확대 적용한다. 구법하에서 그 채권은 시장할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었었다.
- 개인의 投資利子支出을 과세연도기간 동안 얻은 투자소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 조항의 취지들을 감안할 때 순자본차익은 투자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다. 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되는 純資本差益을 갖게 된 투자자는 그 차익을 투자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92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유효하다.
- 分離優先株(stripped preferred stock ; 배당에 대한 권리가 분리되었던 우선주)의

구매자는 최초의 발행할인 규정하에서 分離債(stripped bonds)를 구매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은 分離優先株(stripped preferred stock)의 보유기간 동안 보유자에게 자본차익이 아니라 일반소득을 가져온다. 이 규정은 1993년 4월 30일 이후 구매된 分離優先株에 적용된다.

- 同業企業 持分(partnership interest) 대신 받은 금액에 대해 동업기업의 한 동업자에 의해 인정된 이득을 재규정할 목적으로, 사실상 가격이 오른 재고의 정의는 수정되었다. 즉, 新法은 그 재고의 가치가 모든 동업기업 재산가치의 10%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삭제한다. 이 변화로 그러한 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소득으로 취급될 것이다. 이 조항은 1993년 4월 30일 이후 매도, 교환, 동업기업(partnership) 출자 배분에 대해 유효하다.

IV. 適格退職年金(Qualified Retirement Plans)

현행법은 적격 요건을 갖춘 연금 또는 利潤割當制(profit-sharing plan) 하에서 각 출금 또는 수혜금을 계산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급여에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는 공제한도를 설정하거나 연금수혜액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설정된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지수조정되는 한도는 1993년에 235,840달러이다.

1994 계획연도부터, 한도는 150,000달러로 삭감될 것이며 현 수혜금은 보호된다. 한도 150,000달러는 10,000달러씩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수조정될 것이다. 특별한 過度規定이 정부의 연금과 團體交渉協定에 따라 유지된 연금에 적용된다.

한도의 감소 때문에 더 이상 適格年金에 의해 제공될 수 없는 수혜금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非積立, 非適格 給與移延制(unfunded,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arrangements)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는 현재의 공제액을 상실할 수 있다. 게다가 非積立制(unfunded arrangements)하에서 대상자가 일부 경영진 또는 고임금 종업원에 제한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새로운 한도 이상을 얻는 종업원이 많은 회사는 이들에 대해 손실된 수혜금을 쉽게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상위 경영진은 非適格 給與移延制(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arrangements)로 新法의 효과를 상쇄하는 반면, 다른 중간 경영진은 이러한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퇴직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최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감소된 급여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確定給付年金制(defined benefit pension plan)를 위한 적립을 지체시킬 것이다. 게다가 감소된 급여한도가 연간 공정성 심사(nondiscrimination tests)를 실시하는데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Sec. 401(k) plan 하에서 고임금 종업원에 대한 급여이 연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V. 相續·贈與稅

1. 最高稅率

상속·증여세는 통합과세되기 때문에 개인의 누적적인 증여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 單一累進稅率體系가 적용된다. 1992년부터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인 55%와 53%를 각각 폐지하고 250만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증여액에 대한 세율을 50%로 경감할 계획이었으나, 新法은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인 55% 및 53% 적용조항을 1993년 1월 1일부터 임시조항(1984~92년)에서 永久條項으로 확정하였다. 상속·증여금액이 250만~300만달러인 경우에는 53%,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55%가 적용되며, 世代省略移轉(generation-skipping transfers)에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53% 및 55%의 최고세율은 모든 世代省略移轉에 대해 적용된다.

1,000만달러에서 2,104만달러 사이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누진단계에서 오는 세부담 경감을 보충하기 위하여 5%의 세율이 추가되므로써 60%의 한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新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60만달러인 상속·증여세 면제액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개정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있을 醫療改革(health care reform)에 관한 제안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사망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贈與稅 控除規模의 擴大, 상속재산에서의 보험금 제외 등이 있다.

現行法에서는, 사망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사망시점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근접해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이러한 평가방법(basis step-up rule)을 철폐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무성했었다. 마찬가지로, 클린턴 행정부가 受贈人當 연간 1만달러(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2만달러)의 증여액 공제를 검토했었다.

相續·贈與稅의 稅率體系

(단위: 달러, %)

상속·증여금액	세액	한계세율
0	0	18
10,000	1,800	20
20,000	3,800	22
40,000	8,200	24
60,000	13,000	26
80,000	18,200	28
100,000	23,800	30
150,000	38,800	32
250,000	70,800	34
500,000	155,800	37
750,000	248,300	39
1,000,000	345,800	41
1,250,000	448,300	43
1,500,000	555,800	45
2,000,000	780,800	49
2,500,000	1,025,800	53
3,000,000	1,290,800	55
10,000,000	5,140,800	60
21,040,000	11,764,800	55

2. 遺産 및 信託財産所得에 대한 稅率

遺産 및 信託財産所得에 대한 稅率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세액	한계세율
개정 전	0	0	15
	3,750	562.50	28
	11,250	2,662.50	31
개정 후	0	0	15
	1,500	225	28
	3,500	785	31
	5,500	1,405	36
	7,500	2,125	39.6

1993년 이전에는 遺産 및 信託財産所得이 3,750달러 이하는 15%, 3,750~11,250달

러는 28%, 11,250달러 초과시 31%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에는 유산 및 신탁재산소득에 대해서, 1,500달러 이하는 15%, 1,500~3,500달러는 28%, 3,500~5,500달러는 31%, 그리고 5,500달러 초과시에는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7,500달러를 초과하는 유산 및 신탁재산소득은 加算稅率(surtax rate)이 적용되어 39.6%로 과세된다.

유산 및 신탁재산소득에 대한 최고세율(39.6%)은 일반소득의 최고세율(36%)이 적용되는 課稅區間(25만달러 초과)보다 낮은 소득수준(7,500달러 초과)에서 시작된다. 이로써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所得移轉(income-shifting) 기법은 효력이 약해진다. 대학교육을 위한 재원조달기금 또는 障礙者(disabled person)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재산과 같이 소득을 축적하는 재산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信託財産의 租稅計劃(Trust Tax Planning)

H 씨와 W 씨가 14세 이상의 자녀 3명에 대해 세 개의 신탁재산에 가입하였다. 이 신탁재산은 자체적인 투자소득을 매년 그 신탁수익자(beneficiary)에게 지불하거나 또는 만 35세가 되는 날 수익자에게(원금규모에 따라) 소득배분하기 위해 보유한다. 각 신탁은 자체적인 투자로 1993년에 약 25,000달러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신탁재산이 이자소득을 배분하지 않는다면(신탁재산의 운영경비 유무는 과세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 개정법률하에서는 각 신탁재산의 25,000달러 이자소득에 대해서 약 9,055달러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소득이 배분되며 미혼자녀 한 명이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외에 55,000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진다고 하자. 25,000달러의 이자소득이 과세소득에 합해져서 31%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약 7,750달러가 과세되기 때문에 약 1,305달러의 세액이 절감된다. 만일 다른 미혼자녀가 23,000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지면 이자소득 25,000달러가 과세소득에 더해져서 28%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7,000달러가 과세되기 때문에 2,000달러의 세액이 절감된다. 끝으로, 만일 기혼자인 세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의 과세소득이 25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25,000달러의 이자소득에 대해 39.6%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9,900달러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과세소득이 높아져서 신탁재산소득이 7,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써 이자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했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遺産財産도 一般信託財産과 유사하게 과세되기 때문에 이번 稅率調整은 一般信託財産과 마찬가지로 遺産信託財産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탁재산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신탁재산소득을 受惠者에게 분배하거나 免稅債券 또는 고평가·저배당의 성장형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수를 늘리면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去來費用이 늘어나게 된다.

VI. 法人稅(Business)

1. 法人稅率

과세대상 법인소득은 다음 세 가지 課稅區間(tax brackets)으로 나뉜다(순자본이득 포함).

(단위: 달러, %)

소득 계층	세율
0 이상 50,000 미만	15
50,000 이상 75,000 미만	25
75,000 이상	34

課稅所得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분의 5% 또는 11,750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과세소득이 10만달러와 33만 5천달러 사이인 기업에 대해서 15% 및 25%의 한계세율로 인한 이익을 단계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33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34%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993년 1월 1일부로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의 과세소득(순자본이득 포함)에 대해 새로운 35% 과세구간이 적용된다. 35% 과세구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회계연도가 1993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경우의 회계연도중에는 複合稅率(blended rate)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세부담액은 1993년 1월 1일 이전의 세율(34%)과 35% 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부담액의 加重平均値이다(이 가중평균치는 당해 기업의 회계연도에 속한 날들 중 1993년 1월 1일을 전후한 날짜의 수에 기초한다).

더욱이, 과세소득이 1천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분의 3% 또는 10만달러 중 적은 액수의 세부담이 가산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과세소득이 1천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34%의 한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단계적으로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과세소득이 18,333,333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35%의 單一稅率(flat tax rate)로 과세함을 의미한다.

1993년도 推定納稅額(estimated tax payments)에 미달하는 납세액에 대한 벌칙금 (penalties)에서 세율변동에 의해 미달된 납세액은 감면해 준다. 이러한 납세미달이 세율변동에 따른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신·구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法人稅率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세 액	한계세율
개정 전	0	0	15
	50,000	7,500	25
	75,000	13,750	34
	100,000	22,250	39
	335,000	113,900	34
개정 후	0	0	15
	50,000	7,500	25
	75,000	13,750	34
	100,000	22,250	39
	335,000	113,900	34
	10,000,000	3,400,000	35
	15,000,000	5,250,000	38
	18,333,333	6,416,667	35

註: 개정세율은 1993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과세연도의 납세자는 1993년 1월 1일을 전후한 날짜수를 기초로 복합세율(blended rates)이 적용됨.

개인소득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동업기업(partnership)과 S 법인의 이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1986년의 稅制改革法(Tax Reform Act) 제정 이후 처음으로 C 법인의 最高稅率(top C corporation tax rate)이 최고 個人所得稅率(top individual tax rate)보다 낮아졌다. 이는 S 법인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C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S 법인의 선택(choice-of-entity)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모든 관련요인들에 대한 검토 없이 C 법인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C 법인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되고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配當所得도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S 법인 또는 동업법인 등은 단 한 차례만 과세된다: 수익은 소유주 차원에서 과세되며, 그 후 이 수입이 어떻게 분배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밖에도 비단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배분된 기업수익에 대한 과세 비교

	C 법인과 주주		S 법인과 주주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과세소득 ¹⁾	\$1.00	\$1.00	\$1.00	\$1.00
연방법인세(34%)	(0.34)	(0.34)	(0.00)	(0.00)
순유효배분소득	\$0.66	\$0.66	\$1.00	\$1.00
연방개인소득세 ²⁾ (31% 대 39.6%)	(0.20)	(0.26)	(0.31)	(0.40)
과세후 순현금	\$0.46	\$0.40	\$0.69	\$0.60
배분기업수익에 대한 연방세율	54%	60%	31%	40%

註: 1) 1천만달러 미만의 법인과세소득에 대해 한계소득 1달러를 가정함으로써 3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됨.

2) 모든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분된 것으로 가정함.

2. 企業推算稅(Corporate Estimated Taxes)

假決算(estimates)을 통해 납부(중간에납)해야 하는 당해연도 세액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최근 1991년에는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의 90%만 추산(가결산)을 통해 납부해야 했다.

1993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新法은 이러한 비율을 당해연도 세액의 97%에서 100%로 끌어 올렸다. 따라서 기업은 추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선택요건을 갖게 된다.

(1) 前年度에 세부담을 한 기업은 전년도 세액의 100%. 그러나 대기업(과세소득이 과거 3년 동안에 1,000,000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는 기업)은 1/4분기 납부에 한해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2) 당해연도 세부담액의 100%.

(3) 100% 연간세액(annualized tax)을 납부하는 연간소득(annualized income).

또한 新法은 기업추산세에 적용될 연간소득계산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기업이 연간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이 수정되게 된다. 기업들은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은 그것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의 최초의 推算稅 分割納付(installment) 만기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된 방법에 의거 기업들은 다음 기간의 소득을 기초로 연간소득을 계산할 것이다.

분할납부 기간	방법 1	방법 2	방법 3
1	최초 3개월	최초 2개월	최초 3개월
2	최초 3개월	최초 4개월	최초 5개월
3	최초 6개월	최초 7개월	최초 8개월
4	최초 9개월	최초 10개월	최초 11개월

이 새로운 연간소득방법 때문에 기업들은 당해연도의 소득흐름을 조기에 추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전체 과세연도 동안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해 4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例 : 曆年회사인 A 회사의 과세소득은 1995년 1월 및 2월 모두 1백만달러, 3월에는 5백만달러이다. 만일 A 회사가 2개월을 기초로 연간소득을 계산한다면(방법 2) 연간과세소득은 1천 2백만달러($12/2 \times 2$ 백만달러)가 될 것이다. 만일 3개월(방법 1 또는 3)이 사용된다면 연간과세소득은 2천 8백만달러($12/3 \times 7$ 백만달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방법 2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당해연도 기간에 있어서는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다른 옵션들이 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다.

3. AMT 減價償却

현행법률은 감가상각 계산시 세 가지 분리된 계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1) 定規稅(regular tax), (2) 最低限稅(alternative minimum tax; AMT), (3) 調整經常收入(adjusted current earnings; ACE). AMT 목적하에서는 대부분의 개인재산에 대한 감

가상각이 그 재산의 내용연수와 150% 遞減法(150% declining balance method)에 의해 계산된다. 이러한 감가상각 방식은 정규세 목적하의 감가상각 방식보다 완만하며 AMT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조정되게 한다. 더욱이 ACE 목적하에서는 감가상각이 더욱 완만하다.

- 法人의 AMT 減價償却

(단위: 달러, 年)

	서비스 기관		기술기업		제조업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AMT>						
과세소득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86년 이후 재산 감가상각 조정	1,358,000	1,358,000	1,000,000	1,000,000	1,608,000	1,608,000
조정 전 AMTI	2,358,000	2,358,000	2,000,000	2,000,000	2,608,000	2,608,000
조정 후 경상수익	2,858,000	2,358,000	3,000,000	2,000,000	3,024,667	2,608,000
조정 전 AMTI 초과 ACE 초과분	500,000	0	1,000,000	0	416,667	0
ACE 조정(× 75%)	375,000	0	750,000	0	312,500	0
감면	0	0	0	0	0	0
AMTI	2,733,000	2,358,000	2,750,000	2,000,000	2,950,500	2,608,000
잠정적 최저세(@ 20%)	546,600	471,600	550,000	400,000	590,100	521,600
정규세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총 AMT	206,600	131,600	210,000	60,000	250,100	181,600
<ACE 감가상각 조정>						
조정 전 AMTI	2,358,000	2,358,000	2,000,000	2,000,000	2,608,000	2,608,000
AMT 구매로 재계산된 상각비용	1,500,000	1,500,000	3,000,000	3,000,000	1,250,000	1,250,000
ACE 구매로 재계산된 상각비용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833,333	1,250,000
ACE 감가상각 조정	500,000	0	1,000,000	0	416,667	0
ACE	2,858,000	2,358,000	3,000,000	2,000,000	3,024,667	2,608,000
<자본자산을 가정할 경우>						
자산유형	사무용 가구 및 장비		정보체제		제조장비	
비용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MACRS 상각기간	7	7	5	5	7	7
MACRS 감가상각	2,858,000	2,858,000	4,000,000	4,000,000	2,858,000	2,858,000
AMT 상각기간	10	10	5	5	12	12
AMT 감가상각	1,500,000	1,500,000	3,000,000	3,000,000	1,250,000	1,250,000
ACE 상각기간	10	10	5	5	12	12
ACE 감가상각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833,333	1,250,000

세 가지 분리된 감가상각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서 오는 복잡성과 ACE 감가상각이 資本集約的인 기업에 대해 특히 과중한 세금(toll)을 부과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新法은 1993년 이후 사용되는 재산에 한해 ACE 감가상각 조정방식을 폐지한다.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ACE 감가상각은 폐지되지만 현재의 재산에 대해서는 ACE가 계속 적용된다. 자본집약적인 기업은 ACE 감가상각의 폐지로 인해 앞으로 수 년 내에는 AMT에서 스스로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며 만일 어떤 최소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s)를 지니고 있다면 이것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정 규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4. 任員 報酬(Executive Compensation)

고용주는 적정규모의 급여 및 기타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적정성 기준은 공제 불가능한 배당소득이 공제가 가능한 내용으로 위장될 수 있는 所有集中된 企業(closely held corporation)을 규제하는 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1993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한해, 기업이 공제할 수 있는 임원 보수의 한도액은 5명의 최고 임원 각각에 대해 1,000,000달러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인으로는 대표이사(CEO)와 1934년의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총보수를 신고해야 하는 피고용인(당해 과세연도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4명의 고위 임직원)이 포함된다.

1994년 이전에는 이 규정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1994년도 報酬引上을 1993년도로 앞당기는 연말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控除 가능한 任員 報酬의 限度額

- 대상급여
 - 대표이사(CEO)의 급여
 - 기타 4명의 고위 임원의 급여
- 제외대상
 - 성과급 상여(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 커미션
 - 주주들이 사전에 승인한 성과와 관련된 보너스와 화폐형태가 아닌 주식 옵션 (“out-of-the-money” stock options)

상한액에 성과급 상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과급 상여에는 커미션과 성과목표의 달성에 따라서 지급되는 중역회의/주주의 승인요건에 부합되는 보너스와 같은 다른 인센티브 상여가 포함된다.

또한 新法의 예외조항으로서 주식 옵션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옵션이 발표된 후 주주의 동의를 얻고 “화폐 형태”(지급일의 公正한 市場價值보다 낮은 개별가격)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993년 2월 18일 이전에 맺어진 기존의 고용계약은 제외된다. 성과급의 예외조항 때문에, 임원의 報酬體系가 기본급여의 조정에서 인센티브 賞與들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급여는 1백만달러이며 추가적인 보수는 주식 옵션이 성과단위 또는 보너스의 형태로 지불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와는 달리, 일부 고용주는 현행 급여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공제를 포기한다.

5. 로비活動

新法에서는 거래 및 사업활동을 위해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된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비는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제비용에는 의회, 州立法部(state legislative bodies) 또는 정치권(political subdivisions)에 대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적 캠페인에 대한 참여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법안(legislative matter)이나 선거 또는 국민투표 등[소위 “草根로비活動(grass roots

lobbying)"] 일반대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로비활동의 상당 부분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非營利團體(tax-exempt organization)의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慈善機關(charitabl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新法은 1993년도 이후의 과세기간부터 비영리단체의 로비활동을 포함한 모든 로비활동 경비에 대한 공제폭을 대폭 축소한다.

費用控除가 허용되지 않는 로비활동(deduction for lobbying activities denied) : 新法은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회, 州立法部 또는 행정관료와 교류(communicating)하는 데 따른 비용을 1993년도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지조항은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접촉(단지 회의만은 아님)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다. 新法은 또한 고위 행정관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위 행정관료는 백악관의 대통령, 부통령, 기타 공무원 및 피고용인, 그리고 행정부의 또 다른 기관들(agencies)의 최고위급 2명의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또 국무위원 및 측근 고위관료와 그외 고위 행정관료를 포함한다.

定義 : 비용공제될 수 없는 로비활동은 연방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高位聯邦公務員(federal agency officials)이나 軍人, 國會議員 또는 이들의 비서진과 접촉하는 대부분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州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비용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방의 입법활동에 대한 로비활동 경비의 控除不可 條項은 의회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게 된다. 더욱이, 주 또는 지방의 행정관서나 집행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따른 경비는 공제대상으로 남아 있다.

新法은 소환장(subpoena), 민간조사(civil investigation), 의회법, 그리고 주입법부 또는 지방입법부의 요청으로 입법부의 인사와 접촉할 때의 경비도 공제대상으로 한다. 행정부의 접촉도 민사·형사상의 절차 또는 조사(civil or criminal judicial proceedings or investigation)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정부기관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면 인정이 된다.

IRS검사나 사적인 書面判決(private letter rulings) 등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소송의뢰인(clients)을 대신하여 出廷(appearance)하는 경우는 로비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在宅(in house)로비활동 경비는 新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로비활동에 관계한 피고용자에 대한 지불이 포함되며 외부 로비스트의 고용이나 로비기관(organizations attributable to lobbying)에 지불된 수수료(dues)는 포함되지 않는다.

新法은 IRS를 설정하여, (1) 입법활동이나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와, (2) 입법활동이나 행정부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입법활동이나 행정활동을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로비활동을 支援하는 行爲 : 新法은 일부 개인의 로비활동 조정경비는 물론 계획, 준비 및 조사경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입법부 및 행정부 官僚(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 officials)에게 제공된 接待行爲(meals and entertainment) 및 관광(travel)은 로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외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거래비 또는 사업비의 감축을 도모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 로비활동 고객의 지불내역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과외비용(out-of-pocket cost)을 배상받는(reimbursed) 在宅 로비스트에 대해서 적용된다.

非營利團體에 대한 特別規定 : 新法은, 기관의 로비활동의 일부로서 볼 수 있는 일정비율의 회비에 대한 공제를 인정치 않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節의 “로비費用 控除” 項 및 “非營利團體의 不動產 投資” 項을 참조하기 바란다.

6. 接待費(Business Meal and Entertainment)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조건에 충족되는 접대비는 80% 공제된다. 그러나 접대여건 상 사치스럽거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음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新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접대비의 공제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었다. 이러한 조항이 식당업(restaurant industry)에 미칠 負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新法은 피고용자의 팁에 부과되는 세금(payroll tax)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7. 팁所得에 대한 税金減免(Credit for FICA Paid on Tip Income)

고용주는 聯邦實業稅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과 聯邦保險寄與金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의 취지에 따라 모든 팁의 지불자로 간주된다. 公正勤勞基準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르면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팁은 최소임금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다. 현재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팁에 대한 FICA나 FUTA에 의거한 세액공제는 전혀 없다.

1993년 이후에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 新法은 음식료업체(food or beverage establishments)의 피고용자의 팁에 대한 FICA세액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액수(7.65%)만큼 일반사업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FLSA의 最小賃金規定下的 임금을 초과하는 팁 신고액에 적용된다. 이 법은 고용주가 자신이 받은 FICA 세액공제 액수만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에 부시 전대통령이 거부하였고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들어 있다. 이 규정은 접대비 공제액의 감축으로 接客業所(hospitality industry)가 받게 될 타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중에 부활된 것으로 여겨진다.

8. 클럽會費(Club Dues)

현행 법률은, 클럽이용의 주목적이 거래 또는 사업 때문이며 또 이때의 特別費用이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클럽회비의 80%를 공제로서 인정한다. 클럽에 가입할 때 지불하는 加入費나 기타 수수료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新法은 1993년 이후에 지불 또는 발생하는 모든 클럽회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금지조항은 사업(business), 사회(social), 운동(athletic), 오찬(luncheon), 항공회사(airline), 호텔 및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클럽에 적용된다.

클럽에서 발생한 접대비 등의 기타 사업비는 現行法(立證原則과 50% 不許 原則)에 따라 계속 공제된다.

1994년 이전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93년도에 이미 지급한 익년도 클럽회비(IRS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과세가 유보될 것이다. 과세연도의 납세자는 클럽회비가 과세연도 말 이전에 아니라 1993년 말 이전에 납부 또는 발생하였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9. 移住費用(Moving Expenses)

현행법은 새로이 구한 직장이 거주지에서 전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최소한 35마일 이상 멀 때 발생하는 이사비용에 대해 項目別控除(itemized deduction)를 인정한다. 공제인정 비용은 가재도구(household goods), 운반비, 여비(숙식비 포함), 주택물색경비(house-hunting trips), 임시생활비, 그리고 주택임대 또는 판매 및 구매 경비를 포함한다. 주택물색, 임시생활 및 부동산 구입 또는 매각 비용들은 3,000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물색 및 임시생활비용은 1,5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한다.

1994년부터 新法은 공제가능한 이사비용의 범위에서 다음을 제외한다.

- 직장 근처의 새 숙소에서 여행 및 생활하는 동안 소비된 식사비
- 옛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매입할 때의 비용
- 임시숙박비용 및 주택물색비용

處分費用은 이사비용으로서 더 이상 공제 불가능하나 옛 주택의 매각에 따른 과세 대상 이득을 감소시키고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과세베이스를 높인다.

또한 新法은 새로 구한 직장이 자가에서 전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최소한 35마일 이

상 떨어져 한다는 기준을 50마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에서 보상받은 공제대상 이
사비용을 제외하며, 보상받지 못한 이사비용만 공제된다.

移住費用 計算의 例

회사의 입장에 따라 피고용자가 이사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그 새로운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XYZ사의 피
고용자들은 자주 이사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회사는 이사비용 상황에 따른 일체
의 납세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이사비용을 부담한다. 1994년에 XYZ사의 피용자
인 주디는 업무상 이사를 하면서 다음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가정용품 운반비: 6,000달러
기타 이동비: 1,200달러(식대 100달러 포함)
주택물색 및 소개비: 800달러(식대 100달러 포함)
기존 주택의 매각에 따른 경비: 2,200달러

현행법에 따르면 40달러(식대 200달러의 20%)를 제외한 모든 경비가 세액공
제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여기에 경비의 3,060달러(가정용품 운반비와 기타 이동
비(식대 제외)를 제외한 모든 경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디가 소
득·FICA세 과세구간의 38%에 속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법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이 아닌 위의 경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만일 그녀 대신 XYZ사가 전액 부담
한다면, XYZ사는 그녀에게 약 1,900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
제분과 현행법하에서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총액 지불액 모두에 대한 과세액
상당을 그녀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개정법률은 이사비용을 적정선 이상으로 세액공제함으로써 유리
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피용자인 프레드의 항목별 공제액이 충분치 않
으며, 프레드의 이사비용은 3,200달러이고 전액 세액공제된다고 하자. 개정법률
에 따르면 프레드는 이를 전액 세액공제받으나 현행법하에서는 항목별로 구분할
수 없어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 그 결과 XYZ사는 이들의 상황을 유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新法은 상원이 제안한 공제비용에 대해 연간 총 10,000달러의 공제경비한도를 인
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총소득 조정시 이사비용 공제액을 1986년 이전의 상태로 복귀
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개인들이 각자의 稅務申告時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10. 配偶者 및 扶養家族의 旅費(Travel Expenses)

현행법은 사업상 목적으로 동행하는 배우자나 扶養家族의 여비에 대해 사업비 공제를 허용한다.

1994년부터는 경비를 지출하는 자의 피고용인이 아닌 한, 모든 배우자나 부양가족 또는 동행인의 경비에 대한 사업비 공제는 전반적으로 폐지된다.

11. 負債償還(Cancellation of Indebtedness)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負債償還額도 포함된다. 그러나 11항의 倒産의 경우 또는 부채상환 직전에 파산하는 경우의 부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부채소득이 상환되었으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인해 총소득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유리한 조세상 조건들(예를 들면 純經常損失, 財産總額, 稅額控除 등)은 감소된다.

소위 負債의 株式轉換(stock-for-debt) 예외규정하에서 자체 주식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도산 또는 파산법인은 미미한 액수보다 많은 주식이 발행되고 比例性條件(proportionality requirements)이 충족될 때 상환된 부채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게 되며 유리한 租稅條件들의 감소도 피하게 된다. 그러나 1994년 이후 移轉되는 주식에 한해, 1993년 12월 1일 이전에 도산정리된 법인에 대한 임시 예외규정을 둔 가운데, 부채의 주식전환의 예외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의회는, 부채의 주식전환 예외규정들 때문에 부채소득 청산과 관련한 조세가 면제(forgiveness of tax)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세상 좋은 조건들의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도산으로부터 회생하는 법인은 도산 이후 부채정리를 하여 새로 출발하는 법인 또는 破産法人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역시 부채의 주식전환 예외규정의 폐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1993년 이후의 과세연도에 한해, 新法은 최저한세 공제와 이연된 손실 및 공제(suspended passive losses and credits) 등의 代替條項을 실제로 청산된 부채소득이 소득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라 감소되어야 하는 세제상 좋은 조건들에 대한 목록에 추가시키고 있다.

부채소득 청산규정 대신 조세 조건들의 감소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파산 또는 도산 법인이나 개인의 즉각적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12. 奢侈性 消費稅(Luxury Tax)

1990년에 의회는 30,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보트,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비행기, 10,000달러를 초과하는 보석류, 그리고 역시 10,000달러를 초과하는 모피류에 대해 소매가 기준으로 10%의 소비세, 즉 奢侈性 消費稅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게다가, 자동차, 보트 혹은 비행기를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구입하는 부속물이나 장신구류에 대해서도 사치성 소비세가 적용된다. 이 세목은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이후의 최초의 소매판매에 대한 과세시에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거래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 보트 및 비행기는 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이 세목은 2000년 1월 1일 이전의 모든 판매분에 대해 적용된다.

1993년 1월 1일부로 新法은 비행기, 보트, 모피류 및 보석류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한다.

자동차의 경우 30,000달러를 초과하면 고급 자동차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 자동차의 결정기준 가격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조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의 기준가격은 32,000달러로 인상된다. 전시용 자동차는 1993년 1월 1일부로 사치성 소비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장애인(disabled individuals)가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용 장비는 1991년 1월 1일부로 면제된다.

13. 研究開發費 稅額控除(Research and Development Credit)

1992년 6월 30일까지, 과세연도의 과세베이스 규모를 초과하는 연구비 지출규모에 대해 20%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新法은 이 조항을 1992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신설법인에 적용되는 固定基準率 原則(fixed base percentage rule) 역시 바뀌었다. 1984~88년 동안 적어도 3개 연도의 총수령액이 적정규모가 되지 않는(without adequate gross receipts) 법인에 대해서는 適格支出(qualified expenditure)이 이루어진 1993년 이후의 최초 5개 과세연도 각각에 있어서 0.3%의 고정기준율이 적용될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總受領額에 대한 적격지출의 비율이 적용될 것이다.

1984~88년 동안 충분한 적격지출 또는 적격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설 기업은 그 이후부터 0.3%의 고정베이스율 적용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4. 雇用主의 教育支援

1992년 6월 30일에 발효된 규정하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제공된(업무와의 관련여부와 무관) 교육비용 중 연간 5,250달러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다. 新法은 이를 1992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소급적용한다.

15. 特定職業 稅額控除(Targeted Job Credit)

1992년 6월 30일까지, 고용주는 特定集團(target groups)이 개인에게 지불한 최고 6,000달러 한도 내의 1차연도 적격임금(qualified first-year wages)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2,400달러이다. 新法은 이를 1992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로 遡及適用한다.

16. 聯邦失業附加稅

현행법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자 1인당 연간임금 중 최초의 7,000달러에 대해 8%의 연방실업세를 납부한다. 그 중 6%는 계속 적용되고 2%는 1996년 말로 끝난다.

新法에서는 이 2%의 滿期年度가 1998년까지 2년 연장된다.

- 각 규정 만기의 연장 현황

	발효일자	만기일자				영구규정
		93.12.31	94.6.30	94.12.31	95.6.30	
고용주의 교육지원	92.7.1			●		
특정직업 세액공제	92.7.1			●		
연구분야 세액공제	92.7.1				●	
소규모발행 적격채권	92.7.1					●
적격저당채권 및 저당세액 공제증서	92.7.1					●
저소득자 임대주택 세액공제	92.7.1					●
자영업자 의료보험 세액공제	92.7.1	●				
평가된 재산의 기여금에 대 한 AMT 특혜 폐지						
- 개인재산	92.7.1					●
- 실물재산 및 무형재산	93.1.1					●
Orphan drug credit	92.7.1			●		

VII. 無形資産 處理方式

取得 無形資産의 15年 償却(amortization) : 구법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잔여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의 취득무형자산에 대해서만 상각(depreciation or amortization)이 이루어졌다.

이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과세는 사업자와 IRS간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내용이다. 주요 논쟁부문 중에는 (1) 상각자산과 영업권의 뚜렷한 구분 여부, (2) 다양한 취득자산 매입가의 적절한 배분, (3) 상각가능한 무형자산 비용의 만회방법과 만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와 IRS의 논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新法은 取得 無形資産에 대해 特別償却原則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대부분의 취득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을 15년만에 걸쳐 일정 비율로 상각할 것이다. 취득 무형자산은 추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新法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자체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처리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이 규정은 법 제정일 이후에 취득한 무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업자는 1991년 7월 25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토록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소급적용이 선택된다면 모든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일부 특별한 一括契約(binding contracts)과 넓은 의미의 反휘젓기(anti-churning)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은 무형자산 가치배분의 불확실성과 상각 무형자산의 잔여 사용기간 결정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전에 최초로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稅法(tax code)의 단순화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 규정은 영업권과 현재 사업가치(going concern value)의 상각을 배제하는 수십 가지 조세법률에 반한다. 영업권과 현재 사업가치를 상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서는 기타 상각 가능한 자산의 보다 긴 잔여 사용기간이 비용이 된다.

이 규정은 잔여 사용기간의 상각 및 결정에 관한 논쟁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필요하다. 예컨대, 新法의 적용을 받는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필요한데, 이는 이러한 무형자산의 처분 시에 損益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償却規定(writeoff provisions)이 적용되는 無形資産

- 이러한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영업권 및 현재사업가치
 - 노동력, 정보베이스, 노하우, 고객, 공급자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품목과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무형재산
 - 특허, 면허, 또는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기타 권리
 - 거래 또는 사업상의 취득(acquisition of a trade or business)과 관련한 비경쟁계약(또는 이와 유사한 협정)
 - 독점판매권, 상표 또는 상호
- 개정법률에 포함된 무형자산의 예는, 고객명단, 예약자명단, 보험만기, 환자 또는 고객 명부, 그리고 신문, 잡지, 라디오, TV광고 목록 등이다.

특별히 除外되는 無形資産

-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무형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추상적인 주요 계약과 이와 유사한 금융수단
 - 주식, 동업기업 지분
 - 토지로부터의 수익
 - 컴퓨터 소프트웨어
 - 거래 또는 사업상의 취득(acquisition of a trade or business)과 관련이 없이 취득된 필름, 비디오테이프, 책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으로부터의 수익
 - 거래 또는 사업상의 취득과 무관하게 취득된 특허권 및 저작권
 - 전문 스포츠 독점 판매권(franchise)
 - 저당서비스권(purchased mortgage service rights)
 - 유형자산의 기존 임대에서 오는 수익
- 이전의 법률도 계속 이러한 자산들에 적용된다. 이러한 자산들의 가치 배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문 스포츠 독점판매권(franchise) 및 관련자산(영업권, 현재사업가치 또는 기타 무형자산) 취득비용은 이전의 법률규정하에서 취득된 자산들에 있어서 배분되는데, 이때 이전의 법률규정은 독점판매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전되게 된 당사자간의 계약에 대한 기본 제한규정을 포함한다.

新法은 취득된 독점판매권, 상표 및 상호의 처리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이는 25년간 상각되거나 전혀 상각되지 않는다. 新法은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 15년간의 상각(writeoff)을 인정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 이전의 법률하에서는 취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의 존속기간에 따라 5년 내지 수년 동안 상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짧은 자산을 당시에 제안된 14년의 존속기간을 적용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여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거래 또는 사업상 취득된(the acquisition of a trade and business) 것이 아니면 15년간의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거래 또는 사업목적으로 취득된다고 하더라도 (1) 일반대중이 기꺼이 매입하려고 하고, (2) 非排他的인 特許權이 적용되며, (3) 크게 수정되어 오지 않았으면 강제적인 15년간의 감가상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상각원칙에서 제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36개월 동안 일정비율로 상각될 것이다.

買入 抵當서비스權(purchased mortgage service rights) :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real property)을 저당잡은 대출에 대한 매입 저당서비스권은 거래 또는 사업상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또는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취득된 것이 아니면 제외된다. 이와 같이 제외된 매입 저당서비스권은 9년간 일정률로 상각될 수 있다.

無形資產의 處分 : 사업자가 일련의 관련거래들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무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는 처분된 자산(disposed-of assets)의 잔여분 가치에 기초하여 증가된다. 특정한 취득기회에 취득된 모든 무형자산이 처분되면, 그 가치는 회복된다.

이 규정은 상각기간 초기에 처분될 것으로 본 무형자산에 대해 사업자들이 과도한 매입가격을 배분할 것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득과 함께 매각된 무형자산은 과세되기 때문에(이익의 이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예 : 1993년 7월 1일에 X기업은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된 모든 자산을 Y기업에게 매각하였다. 이 자산은 부동산, 고객목록, 영업권 및 비경쟁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각 자산에 배분된 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10,000,000달러
고객목록	800,000달러
비경쟁계약	900,000달러
영업권	1,500,000달러

이전의 법률하에서 부동산은 31½년(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기간에 취득하면 39년)에 걸쳐 상각된다. 고객목록은, Y기업이 800,000달러의 배분액을 이 목록에 지원할 수 있고 이 자산들의 존속기간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 상각이 가능하다. 비경쟁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상각될 것이며 영업권은 상각 가능하지 않다.

개정법률하에서(예컨대, Y기업이 상각규정의 소급적용을 위하여) 취득된 부동산이 있다면 그 상각은 변하지 않고 위의 분석내용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고객목록, 비경쟁계약 및 영업권은 15년간에 걸쳐 상각될 것이다.

고객목록의 이용기간은 6년, 비경쟁계약의 존속기간은 3년이고 Y기업의 과세연도 첫날에 획득이 이루어졌으며 Y기업은 6월 30일의 과세연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Y기업이 과세연도인 1994년 6월 30일에 이전의 법률 및 개정법률하에서 각각 상각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 법률	개정 법률
영업권	-	100,000달러
비경쟁계약	300,000달러	60,000달러
고객목록	133,333달러	53,333달러
계	433,333달러	213,333달러
세율(추정)	34%	34%
세후수익	147,333달러	72,533달러
1차년도 세액차이		74,800달러

이러한 예는 1차연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Y기업은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Y기업은 모든 요소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요소들 중에는 IRS가 (1) 비경쟁계약에 대한 900,000달러의 배분 또는 (2) 고객목록의 가치 또는 존속기간에 있어서 시도해볼 만한 위험부담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이전의 법률과 개정법률의 결과가 유사하다면 개정법률의 확실성이 선택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非競争契約 : 무형자산 관련 법률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측면은 거래 또는 사업상의 취득과 관련한 비경쟁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상각(writeoff) 기간은 15년이 될 것이다. 이는 밀접한 사업의 이전에 관한 전략적 계획을 크게 수정시킬 것이며 다른 有形資産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관련 법률이 주식의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거래 또는 사업상의 모든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비경쟁계약은 15년간 상각을 받는다.

1. 同業解止에 따른 持分支給에 대한 特別措置의 改正(Modification of Special Treatment for Liquidation Payments to Retiring Partners)

新法에서는 대부분의 동업자의 경우 영업권과 미실현 채권의 은퇴하는 동업자 지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없앴다. 기존법에서는 동업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업자의 지분에 대해 영업권을 상각하고 미실현 채권 역시 상각하며 은퇴하는 동업자는 이들 자금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동업기업이 이 금액을 더이상 상각할 수 없는 경우는 기업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정상분배규정을 적용한다.

신법에서는 법률회사나 회계회사와 같이 자본이 실물소득을 생산하는 요소가 아닌 경우 동업기업에 있어 동업자에게 지불되는 기존의 규정은 변하지 않으나 미실현 채권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과 未收計定(account receivable)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한 계약이 이전에 있지 않는 한 1993년 1월 4일 이후에 은퇴하는 동업자에게 적용된다.

VIII. 中小法人의 投資誘引

1. 179條 經費 限度額의 引上

중소법인의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新法은 有形動産(퍼스널 컴퓨터, 사무장비 등)을 경비로 인정하는 한도액을 현재의 10,000달러에서 17,500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전 법률에서와 같이 경비로 인정되는 액수는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은 차기과세연도로 이월된다. 이러한 경비인정의 한도액 증가는 1993년 이후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한해 유효하다.

이러한 경비인정의 한도액 증가는 중소기업의 신규 또는 중고 자산(사무 장비)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 12월 말 결산업체는 1993년중에 사무장비를 새로이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것이나, 회계연도가 1993년 말에 시작되는 중소기업은 증가된 경비인정 규모를 이용하기 위해 장비의 구입을 늦추고자 할 것이다. 예컨대, 회계연도가 9월 30일인 ABC회사가 회계연도 말인 1993년 9월 30일에 10,000달러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만일 ABC기업이 추가적인 장비의 구입 및 사용을 1993년 10월 1일로 늦추면 차기연도의 한도는 17,500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과세연도의 마지막 분기에 사용된 동산이 당해 과세연도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40%를 초과하면, 반년이 아닌 분기중 상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경비로 인정되는 장비는 40% 계산방식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경비인정의 한도액 인상으로 인해 1993년 이후에는 分期中 償却規定(mid-quarter convention)의 적용이 줄어들 것이다.

2. 特定 資本利得의 課稅減免

현행 법률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교환하여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장기자본이득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순자본이득(순장기자본이득-순단기자본손실)은 28%의 최고법정세율로 과세된다.

特定 資本利得 免除에 관한 規定(要約)

- 자본이익의 50% 면제
- 적격 중소기업의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으로서 최초발행분에 대한 투자이어야 함
- 적격 중소기업 주식의 요건들
 - C 법인(C corporation)
 - 총자산 5천만달러 이하
 -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이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함
- 5년간 주식보유
- 업체당 면제되는 이익은 최초가액의 10배 또는 1천만달러로 제한됨
- 일부 형태의 사업은 불인정(not qualify)
- 면제대상의 절반은 AMT 우대항목(AMT preference item)임

- 다음 사업들은 인정(qualify)되는가?	예	아니오
제조업	●	
도소매업	●	
은행업		●
리스업		●
농업		●
광업(subject to percentage depletion)		●
호텔, 모텔, 레스토랑 관련업종 또는 유사직종		●
다음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체:		
법의 실행(practice of law)		●
공학(engineering)		●
건축		●
회계(accounting)		●
금융 또는 중개 서비스		●
자문		●

新法에서는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중소기업의 주식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50%는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14%의 最高限界稅率이 적용되는데, 적용되는 주식은 중소기업, 신규법인 및 전문 창업투자법인의 주식을 포함하며, 이 규정은 발효 이후에 발행되는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은 新株發行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대한 資金流入을 촉진시킬 것이다.

자본이득의 50%가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을 발행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C 법인이어야 하며 5년간의 주식보유 기간 동안 이러한 자산을 모두 이용하여 거래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C 법인 주식에 대한 투자에 한하여 50% 감면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인서비스업, 은행업, 리스업, 부동산업, 보험업, 농업, 채광업,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주요 자산이 당해 기업 피고용인들의 명성이나 기술이라면 그 주식은 자격이 없다. 무자격 서비스업체는 보건, 법률, 공학, 건축, 회계, 보험통계, 실천예술, 자문, 체육, 금융 및 중개서비스 분야들의 업체들을 포함할 것이다.

적격 주식은 株式引受人(underwriter)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최초발행분(original issue)이어야 하며 법 제정일자 이후에 발행 또는 취득되어야 한다. 면제되는 자본이득은 주식투자의 최초투자액의 10배 또는 적격 중소기업당 1천만달러 중 큰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AMT 우대항목으로서 면제된 자본이득의 절반을 포함함으로써 적격 중소기업 주식으로부터 얻는 자본이득의 75%는 AMT를 목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新法의 다른 규정은 최초의 AMT소득 175,000달러에 대해 AMT세율을 24%에서 26%로 올릴 것이며 이를 초과하면 28%로 올릴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감면으로 인해 AMT를 최고세율로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득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21%에 지나지 않는다.

C 법인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동업기업(partnerships), S 법인, 규제를 받는 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그리고 일반신탁재산(common trust funds) 등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단체(pass-through entities)는 적격 중소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로 인한 이득을 동업자(partner)와 주주(C 법인 제외)에게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資本利得 免除은 S 법인이나 同業企業에 대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는 일반신탁재산 등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단체(pass through entities)가 주식보유 기간 동안 통상적인 공제를 할 수 있어서 주식투자자들의 지분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투자의 매각이득이 단지 14%의 최소이자율 적용을 받게 되어 이익을 보게 된다는 시각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3. 投資利得의 特定 創業會社에 대한 再投資(Rollover of Gain into 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중소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新法에서는 C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 공모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을 60일 이내에 特定 創業投資會社(specialized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SSBIC)에 재투자할 경우에 과세를 이연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법 발효 이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에 한한다.

SSBIC는 1958년의 小規模事業投資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의 Sec.301(d)에 규정된 中小企業廳(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허가를 받은 투자회사이다.

SSBIC는 일반적으로 소수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사적인 모험자본(venture capital) 또는 SBA보장성의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다 함께 투자하도록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다.

新法에서는 유가증권의 매각이득이 SSBIC에 재투자되지 않는 한 자본이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될 것이다.

자본이득으로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 年間 限度額이 있다. 특정 연도에 개인이 이연하기를 선택하는 자본이득의 한도는 5만달러 또는 50만달러에서 과거 이 규정에 의해 면제된 이득을 차감한 액수 중 적은 액수이다. 기업에 대한 한도는 25만달러 또는 1백만달러에서 과거에 면제된 이득규모를 차감한 액수 중 적은 액수이다. 따라서 年間 限度는 개인이 5만달러, 기업이 25만달러이고, 生涯 限度는 개인의 경우 50만달러이고, 기업의 경우 1백만달러이다.

IX. 權限圈域, 企業區域과 其他 誘引制度 (Empowerment Zones, Enterprise Communities and Other Development Incentives)

1. 權限圈域과 企業區域

新法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특수한 지정학적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租稅誘引(tax incentives) 制度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두 종류의 조세혜택을 창출한다: 권한권역과 기업구역. 권한권역은 기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조세유인을 증가하는 조세유인이 주어진다.

9개소의 권한권역과 95개소의 기업구역은 1994년 및 1995년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천한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9개소의 권한권역 가운데 6개소 이하는 도시지역에서, 3개소 이하는 농촌지역에서 지정될 것이다. 기업구역은 65개소 이하가 도시지역에서, 그리고 30개소 이하가 농촌지역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정은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하다.

구역지정의 합리적 기준으로는 最小貧困率(minimum poverty rate), 전반적인 경제적 빈곤수준, 그리고 인구 및 면적 등이 포함된다.

Sec.179 경비의 증가와 면세를 통한 재정지원 등 권한권역 인센티브가 기업구역 내 사업(enterprise zone business)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企業區域 內 事業은 법인, 동업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는데, (1) 대상업체(business)는 그 구역(zone) 내의 적격(qualified) 업체이며, (2) 최소한 총소득의 80%가 이 구역 내의 적격업체에서 나오고, (3) 有形資產의 거의 모든 이용이 이 구역에서 이루어지며, (4) 거의 모든 無形資產이 이 업체의 적극적인 행위시에 이용되고, (5) 피고용인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 구역 내에서 수행되며, (6) 최소한 피고용인의 35%가 이 구역에 거주하고, (7) 해당 업체 소유재산의 조정 전 총베이스 평균의 5% 이하가 금융재산 또는 채권(collectibles)에 해당해야 한다.

적격업체는 판매나 특허를 위한 무형자산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하는 이외의 모든 거래나 사업이다. 구역 내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된 부동산이

비주거용이고 부동산에서 나온 총임대소득의 최소한 50%가 기업구역 내 사업에서 나올 때만이 인정된다. 동산의 사용료는 거의 모두가 기업구역 내 사업 또는 권한구역 거주자에 의한 것일 때만이 자격이 있다.

가. 權限圈域 誘引制度(Empowerment Zone Incentives)

雇用主 賃金 稅額控除 : 구역 내 고용주는, 구역 내 거주자인 동시에 구역 내에서 거의 모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피고용자에 대한 적격임금의 최초 15,000달러에 대하여 20%를 세액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역 내 피고용자 1인당 최고 공제액은 연간 3,000달러이다. 이 세액공제는 AMT 세부담의 25%까지 공제될 수 있다. 이 세액공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Sec.179 經費인정의 增大 : 기업구역 내 사업의 적격 구역 내 자산취득의 경비인정은 20,000달러로 상향조정되게 되었다. 이 재산은 구역지정 이후에 취득되어야 하고, 구역 내 재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이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 재산은 거의 모두 구역 내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된 재산은 이전에 권한구역 내에서 사용되었으면 적격 구역재산을 구성할 수 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재개발된 재산도 경우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

이전의 법률하에서처럼, Sec.179의 경비인정은 특정 수준(threshold) 이상의 적격재산에 대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단계적 폐지의 범위는 적격 구역재산의 비용과 여타 Sec.179 재산의 비용이 200,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 중 절반을 경비로 인정하여 감액시키는 적용이 있게 된다.

權限圈域과 企業區域의 事業에 대한 租稅惠澤

권한구역 : 고용주 임금 공제

有形動産에 대한 Sec.179 경비 증액

적격 구역재산을 재원조달하는 면세채권

기업구역 : 적격 구역재산을 재원조달하는 면세채권

나. 權限圈域과 企業區域 誘引制度

免稅 財源調達 : 권한권역 또는 기업구역 사업이 주요 이용자인, 적격구역 설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의 免稅設備債券(tax-exempt facility bonds)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企業圈域設備債券(enterprise zone facility bonds)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채권의 순수익의 95% 이상이 권한권역 또는 기업구역 내의 토지에 위치한 기업구역 산업을 위한 적격 구역재산을 재원조달하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適格債券의 上限額은 각 구역이나 지역의 적격사업에 대해서는 3백만달러, 그리고 총 권한권이나 기업구역에 대해서는 2천만달러이다. 이러한 채권의 내용은 각 州의 개별적 규정과 채권액 제한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2. 地域開發公社(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 稅額控除

新法은 地域開發工事(CDC)에 대한 현금 출자금(cash contributions)에 대해 새로운 공제(credit)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CDC는 CDC권역 내 거주자의 고용 및 사업기회 부여 형태로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액(credit)은 10년간 매년 CDC에 대한 출자금의 5%, 총 50%로 한정된다. CDC당 총 출자금 최고액수는 2백만 달러이다.

3. 인디언部落 指定保全地(Indian Reservation)의 事業에 대한 租稅誘引

新法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인디언부락 지정보전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사업활동에 소요된 재산을 加速償却(accelerated depreciation)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지불 또는 발생한 임금 또는 의료보험비용에 기초하여 이 지역의 고용보장(employment credit)을 피하는 형태를 취한다.

X. 에너지稅

현행법은 연료 및 연료관련 생산물에 대해 다양한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로부터의 수입은 특정 목적을 위해 여러 信用基金(trust funds)에 예치된다. 이 특정 목적의 예로서는, 고속도로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신용기금(Highway Trust Fund)과 환경정화를 위한 누출지하저장탱크신용기금(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Trust Fund)이 있다. 고속도로연료세와 모터보트연료세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가 1990년 12월 1일에 시작되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1. 運送燃料稅(Transportation Fuel Tax)

新法은 運送燃料稅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Btu세 개념을 부결시킨 상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예산 관련 상원보고서에 따르면, 운송연료세는 적자를 감축시키고 환경문제를 완화시키며 미국의 원유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추정에 의하면 국내 석유(petroleum) 소비량의 3분의 2는 운송목적으로 소비된다. 이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자동차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운송연료세는 고속도로와 철도 및 내륙수로(inland waterway)용 연료, 현재 특수자동차 연료로서 과세되는 액화석유가스(LPG), 그리고 비상업용 모터보트에 사용되는 디젤연료 등에 대해 현행 소비세를 갤런당 4.3센트 인상하게 된다. 증가된 수입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商務省의 綜合基金(general fund)에 적립될 것이다. 운송연료세의 발효일은 1993년 10월 1일이며, 이 날자로 上狀株式稅(Floor Stocks Tax)도 과세된다.

가솔린세의 인상에 대한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일부 남부 및 서부 주에 있어서의 자동차소유자의 수입효과이다. 의회 분과위원회 위원들(congressional committee staffs)의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표들에 의하면 각 주의 평균적인 운전자에 대한 조세효과를 알 수 있다.

運送燃料稅는 조세징수 체계상 자동차연료 소비세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행정 절차가 용이하게 된다.

에너지稅 總括

(단위: 센트/갤런)

	현행 세율	1993.10.1 이후 세율
고속도로 운송수단 및 모터보트용 가솔린과 특수자동차연료 (특별 감면 또는 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14.1	18.4
시내버스의 디젤연료	3.1	7.4
고속도로용 운송수단 및 모터보트용 LPG와 高壓天然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LPG에 한해 14.0	LPG: 18.3, CNG: 4.3 또는 千 입방피트당 48.54
고속도로용 디젤연료	20.1	24.4
비수익성 항공용 가솔린	15.1	19.4
비수익성 항공용 제트연료	17.6	21.9
수익성 항공용 연료	0.1	4.4 (1995.10.1 이후)
철도용 디젤연료	2.6	6.9 (1995.10.1: 5.65)
國內 水路用 燃料	17.1 (1994: 19.1) (1995: 20.1)	21.4 (1994: 23.4) (1995: 24.4)
어업용(fisheries) 또는 고래잡이 사업용 연료, 대외무역용 연료, 그리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비수익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 등은 계속 면세.		

註: 특수자동차 연료에는 벤졸, 벤젠, 나프타, LPG, 油井(casing head) 및 천연 가솔린, 기타 액화연료(liquid) 등이 포함됨.

- 평균적인 운전자에 대한 주정부 가스세(Gas Tax)의 지출비 증가효과

주	운전자 1인의 연평균 마일수	4.3센트 과세의 연간지출비용
알라바마	14,610	31.41
알래스카	12,645	27.19
아리조나	14,554	31.29
아르칸사스	12,752	27.42
캘리포니아	12,943	27.83
콜로라도	13,313	28.62
코네티컷	12,033	25.87
델라웨어	13,578	29.29
D. C.	8,448	18.16
플로리다	11,708	25.17
조지아	15,836	34.05
하와이	11,633	25.01
아이다호	14,492	31.16
일리노이	11,607	24.96
인디애나	15,716	33.79
아이오와	12,396	26.66
캔사스	13,019	27.99
캔터키	14,587	31.36
루이지애나	13,376	28.76
매인	13,328	28.66
매릴랜드	12,865	27.66
매사추세츠	11,064	23.79
미시간	12,735	27.38
미네소타	15,418	33.15
미시시피	12,934	27.81
미주리	13,661	29.37
몬타나	14,334	30.82
네브라스카	13,185	28.35
네바다	11,562	24.86
뉴햄프셔	11,716	25.19
뉴저지	10,475	22.52
뉴멕시코	15,516	33.36
뉴욕	10,486	22.54
노스캐롤라이나	14,269	30.68
노스다코타	13,969	30.03
오하이오	12,450	26.77
오클라호마	14,998	32.25
오레곤	10,852	23.33
펜실베이니아	10,977	23.60
로드아일랜드	10,580	22.75
사우스캐롤라이나	14,345	30.84
사우스다코타	13,395	28.80
테네시	13,931	29.95
텍사스	14,058	30.22
유타	14,425	31.01
버몬트	14,248	30.63
버지니아	13,137	28.24
워싱턴	13,305	28.61
웨스트버지니아	12,462	26.79
위스콘신	13,394	28.80
와이오밍	17,589	37.82
평균	12,854	27.64

2. 디젤稅

新法은 디젤연료 소비세를 비사업용 모터보트에 사용되는 디젤연료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한다. 그러나 상업용 어획을 위한 모터보트, 보수 또는 임대용 모터보트, 또는 기타 사업목적의 모터보트에 사용되는 연료는 계속 면세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新法은 디젤연료세의 징수를 도매단계로부터 최종소비 단계로 전환하였다. 실제로 현재 가솔린 소비세에도 적용 가능한 동일한 과세절차가 디젤연료에 대해 확대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가솔린과는 달리 면세대상 용도의 디젤연료는 면세요건이 충족되면 그 소비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의 소비에 대해 적용된다.

디젤연료 면세사용자는 면세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IRS에 등록해야 한다.

3. 自動車燃料 消費稅

가솔린 1갤런당 14.1센트의 자동차연료 소비세와 갤런당 20.1센트의 디젤연료 소비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들은 1995년 9월 30일까지의 적자재정 감축을 위해 사용될 갤런당 2.5센트의 과세가 포함되어 있다. 新法은 2.5%의 재정적자 감축세율을 1995년 9월 30일에서 1999년 9월 30일까지 연장적용하며 동 기간 동안 철도용 디젤연료에 대한 세율은 갤런당 1.25센트로 낮춘다.

XI. 國際關係

1.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事業場에 대하여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유효한 新法은 푸에르토리코에 사업장이나 다른 미국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에 의해 청구될 수 있는 Sec.936에 의한 세액공제의 총액을 대부분의 경우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新法에서도 Sec.936 기업에 대한 稅額控除額은 기존 법에서와 똑같이 결정되나 다음의 두 가지 한도액 중 하나에 의해서 제한된다.

- 미국이 보유한 사업장(또는 재산)의 노동과 자본을 근거로 한 공제액이 다음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적절한 보수의 60%.
 - 적절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일정 비율.
 - 이윤 분배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미국이 보유한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

- 比例的 限度 : 현재의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하여 1994년에는 60%, 1995년에는 55%, 1996년에는 50%, 1997년에는 45%, 1998년과 그 이후에는 40%.

비례적 한도를 선택할 경우, 그 한도액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Sec.936 기업의 첫 과세연도에 결정해야 하며, 한번 결정된 사항은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Sec.936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하나의 계열그룹에 속하는 모든 Sec.936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新法은 적절한 소유를 원천으로 하는 投資所得(QPSII)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적인 조치와 차이가 없다.

새로운 한도액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新法이 원래 제안되었던 임금공제보다 개선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며, 세액공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Sec.936에 의한 미국조세의 절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도액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적당히 비용이 낮은 저세율 국가(tax haven)라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보유재산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역시 평가될 것이다.

AMT 계산시 Sec.936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AMT 外國納付稅額控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독립된 소득군으로 간주된다.

2. 被支配 外國法人(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CFC)

過度한 受動的 資産을 保有한 被支配 外國法人 : 新法은 수동적인 자산이 총자산의 25% 이상인 경우 CFC의 미국인 주주들로 하여금 일정액을 현행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가되는 소득은 CFC의 (과거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과도한 수동적 자산'에 대한 해당 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에 따른 지분과 1993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축적된 CFC의 유보소득 중 작은 것으로 한다.

1993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축적된 유보소득을 적용하는 新法은 모든 누적된 소득 및 이윤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의회안으로부터의 중요한 변화이다.

新法은 자회사 주식의 25%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CFC의 경우 과도한 수동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자회사의 자산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정에 의하면 같은 CFC 집단에 포함되는 모든 CFC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들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비록 IRS에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긴 하였지만) 자본구조의 재편성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CFC의 대차대조표를 재검토하여 새 규정들의 예상 효과를 평가하고 대차대조표 항목들을 조정함으로써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受動的 資産은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E&P bases)의 분기별 평균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다. 受動的 資産이란 수동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든 자산을 말하며(단, 미국 재산에의 투자는 제외함),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 보험, 증권회사 등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규정하에서 인식된 미국 주주들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특별한 지침은 없다.

QEF(qualified electing funds)를 선택하지 않은 PFICs(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의 경우 과도한 수동적 자산에 귀속되는 미국인 주주의 소득은 과도한 분배(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자 부담)를 초래할 수 있다.

美國財産에의 投資 : 新法은 Sec.956을 수정하여 미국 재산에 대한 투자를 연말이 아닌 분기말 보유재산의 평균에 근거하여 측정하도록 하였다.

系列化 以前의 所得 및 利潤 : 新法에 의하면 Subpart F의 '동일국가' 예외 조항은 배당을 받는 개인이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축적된 소득과 이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 Sec.338에 의해서 계열화 이전의 소득과 이윤을 배제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Sec.960(b)의 單純化 : Sec.960(b)는 과거에 과세된 소득에 기인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증가시킨다. 新法은 Sec. 960(b)를 단순화하여 각각의 독립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범주를 대신하는 하나의 누적적인 초과 한도를 설정하였다.

CFC에 관련된 변화는 일반적으로 1993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3.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變化

正常市場價格 代案 : CFC인 PFICs의 경우, 新法은 PFIC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정상시장가격(current fair market value)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PFIC 자산의 조정된 E&P 기준이 PFIC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CFC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조정된 과세소득을 선택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면 자산의 정상시장가격이 이용되어야 한다.

受動的인 資産 : 新法은 수동적 자산의 범위를 확장시켜, 리스한 자산의 일부분을 리스계약에 의해 지불한 지불금의 현재가치 중 상각되지 않은 부분의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無形資産 : CFC의 시험연구비는 3년 동안 그 CFC의 자산 가액을 결정할 때 무형 자산에 포함시킨다. 마찬가지로, CFC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사용허가를 받은 무형자산의 경우 과세연도 중 지불한 로열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산에 포함된다.

證券去來業의 例外 : 新法은 수동적 소득의 예외 조항에 증권업의 적극적인 사업 활동에 의해서 얻어진 소득을 추가한다. 이러한 예외는 CFC에게만, 그리고 미국 주주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PFIC에 관련된 변화는 일반적으로 1993년 9월 30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유효하다.

4. 外國納付稅額控除의 限度에 影響을 미치는 變化들

試驗研究費 : 新法에서는 시험연구비의 50%가 단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지역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과거에는 Sec.864(f)에 의해서 시험연구비의 64%가 이러한 방법으로 배분되었다).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하는 첫번째 과세연도로서 64% 규정(Rev. Proc.92-56)이 적용된 마지막 과세연도의 다음해에만 적용된다.

海外 로얄티 所得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결정할 때 외국으로부터 얻어지는 로얄티 소득을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하자는 제안은 新法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 및 海運業體 : 과거의 법에 의하면 해외 석유 및 가스 추출 소득(FOGEl), 석유와 관련된 해외소득(FORl), 그리고 해운 소득 등과 관련된 운전자본의 일시적인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新法은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전자본의 예외 조항을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득은 외국세액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수입 추정에 의하면, 이 조항은 5년 동안 25억달러의 재정수입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新法의 국제관계 조항으로 인해 예상되는 조세수입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針葉樹 原木 : 법령 제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미국에서 성장한 침엽수 원목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미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더이상 FSCs(Foreign Sales Corporations) 또는 DISCs(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s)를 위한 수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FC가 이러한 목재의 판매나 제재로부터 얻은 소득은 Subpart F 소득에 포함된다.

5. 移轉價格決定(Transfer Pricing)

新法은 이전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때 사정가격을 허위보고함으로써 벌금을 물게 되는 한계를 천만달러에서 5백만달러와 총수령액의 10% 중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축소할 예정인데 이는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유효하다. 총사정가격의 허위보고에 대한 한계도 역시 개정되었다.

新法에 의하면, 기업들은 이전가격의 허위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당시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은 그들의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적절한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수가 없어야 한다.

多者間 資金調達 合意 : 新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자간의 자금 거래를 양자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거래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기관에 부여한다.

그 결과 IRS가 음성거래(conduit) 또는 back-to-back 합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강화시켰다.

6. 外國人의 國內投資

關聯企業間 支給利子の 損金算入制限(Earning Stripping). 관련기업간 지급이자의 損金算入制限規程(earnings stripping rule)은 일반적으로 조세가 면제되는, 즉 소득세 협약에 의해서 30% 원천과세가 면제되는 외국의 특수관계 기업에 지불된 특정 이자에 대한 현행의 공제액을 제한한다. 이 규정은 1989년 7월 11일 이전의 특정 부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新法은 이러한 부채에 대한 예외를 폐지한다.

新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지불된 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특정한 아주 좁은 범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해외특수관계자에 의해서 보증된 비특수관계인(미국은행도 포함)으로부터의 부채에 대한 이자도 관련기업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제한규정이 적용되며, 이 조항은 기존의 보증에도 적용된다.

新法에 의하면 '보증'은 확인서, 자본금 공여에 대한 약속, 채무자의 자금능력 유지를 위한 약속 등과 같은 지불에 대한 모든 보장-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지에 관계 없이-을 포함한다.

新法에 의하면,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자의 손금산입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비협약국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보증된 미국 은행에 대한 대부금도 이자의 손금산입제한규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新法은 미국은행들을 불리하게 할지도 모른다. 외국은행들은 보증없이도 외국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서 기꺼이 대부를 해주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한 新法은 실제로 보증없이 차용한 데 대한 높은 비용의 결과로 나타난 증가된 이자액공제로 인하여 관련기업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축소시킬지도 모른다.

不定期的인 포트폴리오 利子 : 외국인에게 지급된 포트폴리오 이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받은 대부분의 이자에 대해서, 新法은 포트폴리오 이자의 정의를 축소하여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에 대해 결정된 이자 등과 같은 부정기적인 이자를 제외한다. 그러나 1993년 4월 8일 이후(또는 사실상 1993년 4월 7일에 書面으로 계약한 계약서에 나타난 날 이후)에 발행된 만기일이 고정된 부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이러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협정들에 우선하지 않는다.

XII. 納稅順應의 義務 (Compliance)

1. 不誠實申告 關聯 罰課金

소득세신고시의 상당한 불성실이나 규정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불성실 신고분의 20% 벌과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란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분의 10%를 넘거나 5,000달러가 기준이며 법인은 10,000달러가 기준이다. 불성실신고 금액은 신고내용을 중요한 기관이 증명하거나 IRS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조세처리에 의해 적절하게 사실을 밝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다.

新法에서의 불성실신고 벌과금이 적용되는 기준은

- 합당한 기준(reasonable basis)에도 못미치는 경우는 20% 벌과금에 처해지며 해명으로 면제불가능하고
- 합당한 기준은 충족하나 중요한 기관(substantial authority) 기준에는 못미치는 경우는 해명으로 면제가 가능하다.
- ‘중요한 기관’ 기준은 충족하나 개연성이 부족한 경우는 해명은 필요없으나 租稅避難處 項目(tax shelter items)은 여전히 벌과금의 대상이 된다.
- 개연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조세피난처 항목에도 벌과금이 면제된다.

2. 負債를 辨濟했을 경우의 申告義務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에는 부채의 변제로 인한 소득도 포함되므로 기존의 법에서는 돈을 빌려준 기관의 부채변제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新法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600달러가 넘는 부채의 변제를 IRS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이 조항은 1993년 이후 발생한 부채의 변제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被支拂證憑書類(payee statement)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 미신고건당 50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 미신고 벌과금 최대한도는 250,000달러이고
- 중빙서류 미비치 벌과금 최대한도는 10,000달러이다.

3. 45日間の 利子免除期間の 擴大

기존의 법에서 IRS는 최초(original) 소득세 신고에 따른 税金還給이 1) 신고일 또는 2) 최초 신고마감일 중 더 늦은 일자가 지난 뒤 45일 내에 이루어지면 환급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다. IRS는 청구가 있는 뒤 45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면 손실이나 공제의 이연으로 인한 환급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IRS는 이외의 모든 최초 신고, 수정신고, 또는 환급의 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新法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첫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최초 소득세 신고에서 모든 최초 신고로 범위를 넓혔다. 둘째, 1994년 이후 수정신고의 경우, 환급이 청구일로부터 45일 내에 이루어지면 환급청구일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例 : X라는 회사가 1994년도분의 소득세신고를 연장하여 1995년 9월 15일에 하였고 이때 추정된 조세납부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1997년 3월 1일에 X는 1994년도분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000달러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만약 IRS가 1997년 4월 1일에 환급하는 경우 1995년 3월 15일부터 1997년 3월 1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환급이 1998년 3월 15일에 이루어지면 1995년 3월 15일부터 1998년 3월 15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4. 其他給與의 源泉徴収

1994년 이전에 지급된 보너스, 커미션 등의 付随收入은 20%의 所得稅 源泉徴収의 대상이었다.

新法에서는 1994년부터 28%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였다.

XIII. 非營利團體 (Tax-Exempt Organizations)³⁾

1. 寄附金の 證憑

일반적으로 자선기관에 기부되는 금액에는 공제가 허용된다. 구법에서는 현금이나 수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선기부의 경우에는 세무신고시 그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부를 받는 단체의 경우에도 IRS나 기부자를 위해 기부에 관한 내용을 화일로 정리해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

현금 이외의 형태로 기부한 경우 공제액이 500달러를 넘으면 세금신고시 증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證憑義務 : 新法에서는 기부액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에 기부자가 기부를 받는 단체로부터 기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조항은 1993년 이후의 기부부터 적용된다. 증빙서류에는 기부금의 액수가 기재되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재화와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것의 가치를 표시해 주어야 하며 제공된 재화나 용역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고 표시해야 한다.

증빙의 형태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고 편지, 엽서, 워드 등 어떠한 것도 허용된다. 증빙의 경우 기부자의 사회보장 번호나 납세자 확인 번호가 필요치 않으며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가 IRS에 세금신고서를 화일로 만들어 보관함으로써 기부자와 기부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없다.

기부자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마감일까지 자선단체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분할 기부한 경우 합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250달러 기준을 적용하여 250달러가 넘는 기부의 경우에만 증빙이 요구된다. 예컨대, 3월에 한 자선기관에 200달러를, 9월에 150달러를 기부했을 경우에는 어느 기부도 250달러를 넘지 않으므로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

3) 여기서 Non-Profit Organization은 공익단체를 뜻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영리단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新法の 경우에도 자선단체는 많은 액수를 내는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기부자가 자선단체로부터 받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종교적 보상(예를 들면, 종교의식에의 참가)이나 미미한 물질적인 보상(예를 들면, 초나 카드) 등은 증빙 서류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

反對給付가 따르는 寄附 : 新法下에서는, 자선단체가 기부에 대한 대가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75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공제 가능한 액수 (2)기부자에게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예컨대, 기부자가 100달러를 기부하고 자선단체로부터 40달러짜리 저녁을 제공받은 경우,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60달러가 공제액수임을 알려 주어야 한다.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종교적 보상이나 미미한 물질적인 보상의 경우에는 앞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물관의 기념품 상점에서의 매매와 같이 기부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자가 증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반면 자선단체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를 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한 건당 10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되며 행사당 최고 5,000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2. 로비費用 控除

Sec.501(h) 조항이 적용되는 공공자선단체에게는 일정 한도의 로비활동비용이 허용되는 반면, 개인재단의 경우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로비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소비세에 加算稅率(penalty excise tax)이 적용된다.

會費 : 新法에서는 로비관련활동을 하는 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의 회비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flow-through rule). 그리고 그러한 기관은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어떤 무역협회의 1년 예산이 2백만달러이고 20만달러를 로비활동에 지출하는 경우 2,000명의 각 회원들의 년회비가 1,000달러이면 협회는 회비의 10%(또는 100달러)가 공제되지 않음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新法下에서의 證憑 義務

	기부를 받는 단체	기부자
반대급부가 따르는 기부 > \$75	기부자에게 다음 두가지를 통보해야 함: (1)공제가능액 (2)기부자에게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	250달러가 넘지 않으면 없음
현금기부 > \$250	(1)기부금의 액수 (2)기부자에게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관한 정보나 (3)제공된 재화나 용역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려야 함	기부를 받는 단체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그 단체로 부터 증빙을 받아야 함
비물질적인 종교적 보상	없음	없음
기부의 성격이 전혀 없는 매매	없음	없음

로비활동의 지출액수가 1년에 2,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공개할 필요가 없다. 단체는 로비비용에 인건비와 같은 직접비용만 보고하고 간접비용을 제외시킴으로써 로비 지출액을 축소·보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新法은 로비비용에 대해 이전보다 더 정확한 회계를 요구하고 있다. 외부의 「로비스트」에게 지불된 보수의 경우는 2,000달러가 넘지 않아도 보고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공제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지만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회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영리단체(예: 세금면제단체)가 IRS에 증명하면 그 단체는 공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waiver rule).

3. 非營利團體의 不動產 投資

비영리단체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활동으로부터의 課稅所得(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 UBTI)에 관한 조항을 완화하는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負債를 통해 調達한 所得에 관한 規程 緩和 : 구법에서는 연금신탁, 교육기관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debt-financed investment)를 하는 경우 그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新法에서는 이러한 제약들이 완화되었다.

非營利團體의 不動產 投資(租稅惠澤의 要約)

條 項	舊 法	新 法
부채를 통한 투자로부터의 소득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이전의 조건들이 완화됨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동업기업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 중 비영리단체의 몫은 UBTI 규정이 적용됨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됨
소유권을 가진 단체	부채를 통한 투자로부터의 소득을 제외한 어떤 UBTI에 대해서도 면세를 불허	총소득의 10%까지는 주차, 자판기사업과 같은 부수적 소득은 면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득	과 세	면 세
옵션 프리미엄과 대부조건수수료	UBTI인지가 불분명	UBTI에서 제외
부동산 투자신탁의 연금기금투자	연금신탁의 경우 “five or fewer” 규정을 적용. 주식이 부채를 통한 것이 아니면 부동산 투자신탁으로 부터의 배당금은 UBI가 아님	연금신탁은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하지 않음. 부동산 투자신탁의 주식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연금신탁의 경우 배당금중 일정부분은 과세됨

公開的으로 去來되는 同業企業(Publicly Traded Partnership) : 舊法에서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 중 비영리단체의 몫은 UBTI규정이 적용되었으나, 新法에서는 동업기업(partnership)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UBTI규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所有權을 가진 團體 (Title-Holding Company) : 舊法에는 돈을 빌려 투자한 부동산(debt-financed property)으로부터의 소득을 제외한 어떠한 UBTI에 대해서도 면세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新法에서는 총소득의 10%까지는 주차, 자판기사업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한다.

特定金融機關으로부터의 不動產 賣買에 따른 所得 : 이전법에서는 자산의 판매나 교환 그외 기타 거래로부터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었으나 新法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산을 판매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준다.

옵션 프리미엄과 貸付條件手數料(Option Premiums and Loan Commitment Fees) : 이전법에는 옵션 프리미엄과 대부조건 수수료가 UBTI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으나 新法에서는 이러한 소득들은 다른 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UBTI에서 제외된다.

不動產 投資信託의 年金基金投資 (Pension Funds Investing in REITs) : 이전법에서는 연금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주식이 빌린 자금을 의한(debt-financed) 투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신탁으로부터의 배당금은 UBTI가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신탁 주식의 50% 이상이 5명 이하에 의해 소유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때 연금신탁은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되었다. 新法에서는 연금신탁은 하나의 개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신탁의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연금신탁의 경우 그로부터의 배당금 중 일정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XIV. 不動産

1. 非住居用 不動産의 償却期間

구법에서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가상각 공제한도는 31년 6개월의 상각기간 (recovery period)을 거친 定額法(strait-line method)에 의해 결정되었다. 最低限稅目的(alternative minimum tax purposes)에서의 減價償却期間은 40년이다.

新法은 定規稅(regular tax) 목적의 감가상각기간을 31년 6개월에서 39년으로 늘인 다. 이러한 변화는 1993년 5월 12일 이후부터 사용되는 재산에 한해 유효하다. 그러나 1993년 5월 13일 이전에 착공되었거나 소유주가 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재산은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AMT 상각이 거의 또는 전혀 조정되지 않는다.

2. 消極的인 活動에 따른 損失(Passive Activity Losses)

소극적인 활동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극적인 거래 또는 사업활동에 따른 控除 및 損失 認定額은 한정된다. 이 원칙에 따라 적용이 일시 중지된(suspended) 손실 및 공제분은 이월되며, 소극적인 활동에 의한 이익 전체가 이와는 관련이 없는 자에게로 처분되면 손실은 모두 인정된다.

소극적인 활동은 소유주가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은 거래 또는 사업활동, 그리고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賃貸活動으로 정의된다. 최고 25,000달러의 부동산임대 손실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소극적인 활동으로 보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러한 예외는 총소득을 100,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新法은 소극적인 활동에 따른 손실의 제한적 인정 규정에서 근로시간(최소 750시간)의 50% 이상을 부동산 거래 또는 사업에 소모한 부동산 소유주를 구제하는 규정

을 마련하고 있다. 피고용자가 고용주의 재산(entity)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재산의 거래 또는 사업상 피고용자로서 수행한 개인서비스는 인정된다. 所有持分이 집중된 (closely-held) C 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총수입 중 50% 이상이 이 기업이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재산의 거래 또는 사업에서 나올 경우 이 기업은 구제대상이 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느 한사람이 50%와 750시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주가 不動産賃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이 소유주는 이러한 활동에 따른 부동산임대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 규정은 1993년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규정상 비소극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재산임대 활동의 결과에 기인한 이연된 손실은 이전의 소극적인 활동에 기인한 손실로 간주된다. 이연된 손실은 다른 요인에 의한 소극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에 의한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이연된 손실중 잔여분은 소유주가 課稅對象 處分活動에 의해 이익을 무관한 개인에게 처분할 경우에 완전히 처리된다.

3. 不動産事業負債(Real Property Business Indebtedness)의 取扱

부채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예외 중에는 11항의 도산, 채무자의 파산, 농장부채 등의 경우와 관련한 상황이 포함된다.

新法은 C 법인 이외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신들의 소득에서 자신들의 適格 財産事業 負債의 償還에 따른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여도 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재산은 제외된 소득만큼 감소된다.

S 법인과 同業企業(partnership)은 이 규정으로 인해 이익을 본다. 동업인이 이익을 보는지는 불명확하다.

新法에 따르면,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규모는 상환전의 主要負債額이 담보된 법인재산의 공정 시장가격 총액의 초과분을 초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는 부채소득의 상환액 중 제외된 액수를 조정한 재산총액의 조정 후 또는 상환 직전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각가능한 재산(real property)의 총조정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규정은 1992년 이후의 부채상환에 대해 적용된다. 다음 사례는 하원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1993년 7월 1일 현재 J씨는 150,000달러 상당의 사업용 건축물을 소유하는데, 이 건축물은 최초에 110,000달러의 부채에 저당잡힌 후 90,000달러의 두번째 부채에 또다시 저당잡혀 있다고 가정하자. J씨는 두번째 저당권자에게 두번째 저당부채를 60,000달러 상환하여 30,000달러로 줄이겠다고 약속한다. 규정에 따르면, J씨가 공제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업재산(business real property)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J씨는 위 상환액 중 50,000달러를 총소득에서 제외시키는 선택을 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환 직전에 상환된 주요 부채액(90,000달러)이 그 담보재산의 공정시장가치(자유롭게 형성된 명확한 가치 150,000달러에서 적격사업재산 부채 11,000달러를 뺀 40,000달러)를 50,000달러 초과하기 때문이다. 상환액 중 남은 10,000달러는 총소득에 귀속된다.

4. 非營利團體(Tax-Exempt Organizations)의 不動產 投資

新法은 비영리단체의 부동산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많은 조세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규정은 第XIII章 「非營利團體」에 요약되어 있다.

5. 低所得層 住宅 稅額控除

1992년 6월 30일까지는 신축되거나 크게 개조된 저소득 임대주택의 경우 10년간의 연간 分割納付額은 稅額控除(tax credit)를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소유주는 州 稅額控除當局(credit authority)으로부터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세액공제 배분(low-income housing credit allocation)을 받아야 한다.

新法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를 1992년 6월 30일로 소급·복귀시키고 이를 영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新法은 이러한 세액공제 내용 중 일부를 기술적으로 다소 변경하였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는 單獨自家住宅(single-family, owner-occupied residences)의 매입, 개조 또는 개량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免稅適格抵當債券(tax-exempt qualified mortgage bonds)을 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당국의 저당 세액공제(credit) 증명서 발행에 대해 정부는 적격 저당채권 한도로 대체할 수 있었다.

新法은 이 프로그램을 1992년 7월 1일로 소급·복귀시키고 이를 영구화시키고 있다.

X V. 其他 (Other Items)

1. 聯邦貯蓄貸付保險會社(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補助

구법에서는 貯蓄貸付保險會社의 위기로 인해 일련의 금융조직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혁조치들 중에는 貯蓄貸付保險會社를 건전한 상태로 돌려 놓기 위한 조세유인 정책도 있었다. 조세유인정책에 의해 FSLIC로부터의 금융지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不實債券控除(bad debt deductions)가 강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조세유인정책들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저축대부보험회사에 대한 조세유인정책은 너무 관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저축대부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자산의 매매시 자본손실을 본 경우 그러한 손실이 FSLIC에 의해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新法에서는 FSLIC 보조를 받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정하는 데 있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의 감축을 제외하였고 더욱이 FSLIC 보조를 받는 대부의 유보나 특정 상각(reserve or specific charge-off method)을 금지하였다.

2. 證券 딜러의 市場會計 調整(Mark-to-Market Accounting for Securities Dealers)

구법에서 증권 딜러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팔기 위해 보유중인 증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 1) 비용(해당증권 매입시점의 가격).
- 2) 시장가격.
- 3) 양자 중에서 작은 액수.

新法에서는 팔기 위해 보유 중인 증권은 시장가격에 의해 평가하고 팔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last business day of the year)의 市場價格에 의해 팔리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추정한다.

3. 州政府 租稅에의 影響

聯邦政府의 일련의 변화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가 聯邦稅率을 높임으로 인해 연방세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주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게된다. 연방정부가 공제를 줄이고 과세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펴므로써 주정부의 경우에도 課稅所得의 계산시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게 된다.

주정부도 연방정부의 稅制改編에 對應하여 조세제도를 변경시킬 수 있지만 租稅改革을 단행할지는 미지수이다. 新法의 경우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給與控除와 施設費用損費認定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특혜들은 연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로 특혜를 받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9군데로 제한되어 있다.

運送燃料稅는 처음에 제안되었던 Btu세를 代替한다. 세금의 부과로 인한 급유가격의 상승은 가솔린에 대한 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연방의 增稅措置는 주정부의 연료세의 증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개혁에서 주정부에게 위안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소비세나 부가세 등이 연방세로 신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COOPERS & LYBRAND의 조사에 의하면 중간규모의 기업들 중 3/4이 이번 연방정부의 증세조치는 주나 지방정부의 增稅改革을 가져와 10% 정도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의 주된 근거로는 社會福祉擴充으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함을 들고 있다. 주정부도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복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財源調達에 苦心하고 있다.